



**제 876 호**

2009년 7월 31일 금요일

|        |       |
|--------|-------|
| 선<br>람 | 기관의 장 |
|        |       |

**차      례**

**조      례**

|                                                                                |    |
|--------------------------------------------------------------------------------|----|
| ○ 조례 제2009-94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                                        | 1  |
| ○ 조례 제2009-9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1 |
| ○ 조례 제2009-9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 39 |
| ○ 조례 제2009-9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 40 |
| ○ 조례 제2009-95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 43 |
| ○ 조례 제2009-95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                           | 45 |
| ○ 조례 제2009-95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                              | 46 |
| ○ 조례 제2009-9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 47 |
| ○ 조례 제2009-95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1 |
| ○ 조례 제2009-9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 53 |
| ○ 조례 제2009-95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55 |
| ○ 조례 제2009-95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8 |
| ○ 조례 제2009-95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 62 |
| ○ 조례 제2009-9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 64 |
| ○ 조례 제2009-9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66 |
| ○ 조례 제2009-9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 69 |
| ○ 조례 제2009-9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71 |
| ○ 조례 제2009-9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73 |
| ○ 조례 제2009-9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                         | 75 |
| ○ 조례 제2009-9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77 |
| ○ 조례 제2009-9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78 |
| ○ 조례 제2009-9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 84 |
| ○ 조례 제2009-9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 .....                   | 97 |

**공      고**

|                                                           |     |
|-----------------------------------------------------------|-----|
| ○ 제2009-1135호 의료급여 관리자 채용 공고 .....                        | 99  |
| ○ 제2009-113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분 공시송달 .....        | 101 |
| ○ 제2009-1146호 차량초과에 따른 자동차알소등록 예고 .....                   | 105 |
| ○ 제2009-1147호 임시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                        | 106 |
| ○ 제2009-1152호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가격조정 결정·공시 .....   | 108 |
| ○ 제2009-115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보서·고지서 공시송달 .....       | 112 |
| ○ 제2009-115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115 |
| ○ 제2009-1161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        | 125 |
| ○ 제2009-1162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 149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4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의**

제2조(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  
다.

②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  
로 한다.

③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3조(집회) ① 영 제54조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3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56조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총무위원회 7명 이내
3. 사회도시위원회 7명 이내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법 제71조에 의한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국 및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각 동의 사무 중 제2호가목에 속하는 사항

다. 법 제146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및 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각 동의 사무 중 제3호가목에 속하는 사항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위원회) ①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이하 “심사보조자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분야 등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등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당해 안전의 심사기간에 한하되,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위원의 수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해당 안전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의 별표 1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 대하여는 안전심사가 종료되는 날에 별표 1에 의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은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해당 안전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전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촉안전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거나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17조(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의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39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 및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의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 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①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 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 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로 한다)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 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한 업무, 회계 및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24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및 실시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 시행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제3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영 제43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27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이 의회에서 한 증언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29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관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
2.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참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④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이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30조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5장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제36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과장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 제6장 증인 등 비용지급 기준

제37조(증인의 비용 지급) 영 제4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는 증인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9조(비용지급의 예외) 의원 및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제41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42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장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3조(윤리강령)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구민에게 의원의 책임을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44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3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12.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제4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9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법 제35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8장 포상

제48조(포상시행) 의회는 의회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49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0조(포상대상)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1. 표창장

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2. 감사장 및 감사패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공로패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기념패

가.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의장 또는 의원 등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5. 상장

가.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나.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다.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5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수여할 수 있다.

1.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2.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양양
3.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53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54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단체장 및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55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표상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6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전문위원(3명) 및 의사담당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7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58조(수상자 명부) ① 포상수상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 종류의 구분 없이 누연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5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제47조는 2009. 10. 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5.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6.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7.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포상 조례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별표 1]

| 구 분  | 액 수                              |
|------|----------------------------------|
| 1일수당 | 100,000원                         |
|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2호 상당액 |

[별지 제1호서식]

심사보조자(자문위원) 위촉 요청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심사보조자(자문위원)의 위촉을 요청합니다.

|                 |    |  |      |  |    |  |
|-----------------|----|--|------|--|----|--|
| 안 건 명           |    |  |      |  |    |  |
| 심사보조<br>대상업무    |    |  |      |  |    |  |
| 심사보조자<br>(자문위원) | 성명 |  | 생년월일 |  | 직업 |  |
|                 | 주소 |  |      |  |    |  |
| 위촉기간            |    |  |      |  |    |  |
| 위촉이유            |    |  |      |  |    |  |

- ※ 첨부서류 ① 이력서 1통  
② 자격증사본 1매  
③ 경력증명서 1통

( )위원회위원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증 인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인)

## [별지 제3호서식]

##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      |        |           |      |      |  |
|------|--------|-----------|------|------|--|
| 소속정당 |        |           | 선거구분 | 지역구  |  |
| 성명   | 한글     |           |      | 비례대표 |  |
|      | 한자     |           | 생년월일 |      |  |
| 겸직내용 | 기관·단체명 |           |      |      |  |
|      | 직위     |           | 재직기간 |      |  |
|      | 보수     | (택일) 연월원원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운영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의원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기 념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 [별지 제9호서식]

| 포 상 추 천 서                                   |        |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소 속                                         |        | 직 위  |     |
| 직 급                                         |        | 근무기간 | 년 월 |
| 추천훈격                                        |        | 추천순위 |     |
| 추천사유                                        |        |      |     |
| 1.<br>2.<br>3.<br>4.<br>5.<br>※첨부 : 공적조서 1부 |        |      |     |
| 추 천 인                                       |        |      |     |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
|                                             |        | (인)  |     |
|                                             |        | (인)  |     |
|                                             |        | (인)  |     |
| 년 월 일<br><br>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        |      |     |

## [별지 제10호서식]

| 공 적 조 서                 |            |       |     |
|-------------------------|------------|-------|-----|
| 성 명                     | (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군번(군인의 경우) |       |     |
| 주 소                     |            |       |     |
| 소 속                     | 직 위        |       |     |
| 직 급                     | 근무기간       |       |     |
| 추천훈격                    | 추천순위       |       |     |
| 주요학력 및 경력               |            |       |     |
| 년 월 일                   | 이 력        | 년 월 일 | 이 력 |
|                         |            |       |     |
|                         |            |       |     |
|                         |            |       |     |
|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 |            |       |     |
| 년 월 일                   | 내 용        | 년 월 일 | 내 용 |
|                         |            |       |     |
|                         |            |       |     |
|                         |            |       |     |
| 조 사 자                   |            |       |     |
| 소 속                     |            | 직 위   |     |
| 직 급                     |            | 성 명   | (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            |       |     |
| 년 월 일                   |            |       |     |
| 추천관 직위 성명               |            |       |     |

## [별지 제10호서식의 뒷면]

| 공 적 사 항 |
|---------|
|         |

[별지 제11호서식]

## 공적심사 의결서

| 구 분           | 주소 또는 소속                                                                                                                                                                                                                                                                                                                                        | 직 위 | 성 명 | 담당업무내용 |
|---------------|-------------------------------------------------------------------------------------------------------------------------------------------------------------------------------------------------------------------------------------------------------------------------------------------------------------------------------------------------|-----|-----|--------|
| 표창대상자<br>인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결주문          |                                                                                                                                                                                                                                                                                                                                                 |     |     |        |
| 이 유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의결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47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br>고 |
|----------------------------------------------|--------------|--------|
|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br>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br>임용권 | 「지방자치법」 제91조 |        |

## [별표 2]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br>고 |
|-------------------------------------------------------------------------------------------------------------------------------------------------------------------------------------------------------------------------------------------|------------------------------------------------------------------------------------------------------------------------------------------------------------------------------------------------------------------------|--------|
|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br>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br>나. 휴업·폐업 신고<br>다. 시정명령 등<br>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br>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br>바. 부정의료업자 단속<br>사.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br><br>아. 의료지도원 임명<br><br>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br>차. 과징금 처분<br>카.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br>제25조 및 제26조<br>「의료법」 제40조<br>「의료법」 제63조<br>「의료법」 제64조<br>「의료법」 제61조<br>「의료법」 제64조<br>「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br>제31조<br>「의료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br>제65조<br>「의료법」 제84조<br>「의료법」 제67조<br>「의료법」 제92조 |        |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br>나. 지도·감독                                                                                                                                                                           | 「의료법」 제37조<br>「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br>에 관한 규칙」 제16조                                                                                                                                                                     |        |
| 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br>나. 지도·점검<br>다. 행정처분                                                                                                                                                                              | 「의료법」 제82조<br>「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br>「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        |
| 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치과기공소 인정<br><br>나.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br>시행규칙」<br>제2조<br>「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br>시행규칙」<br>제5조                                                                                                                                                       |        |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 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br>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신고 수리<br>다. 안경업소의 지도·감독<br>라. 안경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등록의 취소 등<br>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br>「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br><br>「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br>「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br>「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 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br>가. 약국 개설등록<br>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br>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 「약사법」 제20조<br>「약사법」 제22조<br>「약사법」 제76조                                                                                                               |     |
| 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br>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
| 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br>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br>나. 의료기기 변경신고<br>다. 휴·폐업 신고<br>라. 행정처분                                                                                                               | 「의료기기법」 제16조<br>「의료기기법」 제11조<br>「의료기기법」 제13조<br>「의료기기법」 제32조                                                                                         |     |
| 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br>가. 시체해부<br>나. 시체해부 명령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br>「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                                                                                                     |     |
| 1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br>나.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 업무<br>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br>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br>마. 보건교육의 실시 등<br>바.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br>사.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br>「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br>「국민건강증진법」 제8조<br>「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br><br>「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br>「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br>「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     |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 아.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br>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br>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br>자.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br>「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br>「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     |
| 11. 전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br>가.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br>나. 전염병환자등의 보호 및 진료<br>다. 전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br>라. 전염병 정보의 분석 및 제공<br>마.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br>바.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재 내성감시<br>사. 건강진단 등의 명령<br><br>아.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br><br>자. 공·사립 의료기관대용<br><br>차.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br><br>카.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br>타. 제1군전염병예방조치<br>파.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소독조치<br>하.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br>「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br>「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br>「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br>「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br>「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br><br>「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br>「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br>「전염병예방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br>「전염병예방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br>「전염병예방법」 제37조<br>「전염병예방법」 제39조<br>「전염병예방법」 제40조<br>「전염병예방법」 제42조 |     |
|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br>나. 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br>다. 영업의 정지명령 등<br>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br>마.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br>「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4<br>「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8<br>「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br>「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                                                                                                                                                                                                         |     |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예방접종의 공고<br>나. 예방접종증명서 교부<br>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보고<br>라. 환자의 취업제한 및 재취업<br>마. 입원명령<br>바. 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 「결핵예방법」 제15조<br>「결핵예방법」 제18조<br>「결핵예방법」 제19조<br><br>「결핵예방법」 제23조 및 제24조<br>「결핵예방법」 제25조<br>「결핵예방법」 제29조                                                                             |     |
| 14. 기생충질환 예방에 관한 권한<br>가. 수거·검사                                                                                                                                                   |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                                                                                                                                                                      |     |
| 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수립<br>나. 검진 및 역학조사<br><br>다. 치료권고<br>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br>「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br>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br>「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4조<br>「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     |
| 16. 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br>나. 예방접종의 공고<br><br>다. 예방접종의 증명서교부<br>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br>마.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 및 폐기처분<br>바.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br>「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br>시행규칙 제5조<br>「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같은 법<br>시행규칙 제9조<br>「전염병예방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br>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br>「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의2<br>「전염병예방법」 제21조의3 |     |
| 1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모자보건수첩 발급<br><br>나. 임신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br><br>다. 임신부 안전분만 조치<br>라.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br><br>마. 안전분만 조치,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br>보급에 따른 비용의 징수<br>바. 과태료 부과·징수 | 「모자보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br>규칙 제3조<br>「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br>령 제13조<br>「모자보건법」 제11조<br>「모자보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br>규칙 제8조<br>「모자보건법」 제23조<br><br>「모자보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br>령 제22조     |     |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 18.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암관리세부집행계획 수립                                                                                                                                                                                    | 「암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19.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치매관리사업                                                                                                                                                                                          | 「노인복지법」 제29조                                                                                                                                                                                                                                                                  |     |
| 20.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수시 건강진단 실시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     |
| 21.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br>나. 지도 및 보고                                                                                                                                                                 |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br>「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11조                                                                                                                                                                                                                         |     |
| 22.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br>나. 과징금처분<br><br>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br><br>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br><br>마.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등<br><br>바. 청문<br>사. 보고·검사 등<br><br>아. 과태료의 부과·징수<br><br>자. 퇴원자 일시적 보호조치<br>차.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 「정신보건법」 제12조<br>「정신보건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br>「정신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br>「정신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br>「정신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br>「정신보건법」 제20조<br>「정신보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br>「정신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br>「정신보건법 시행령」 제5조<br>「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     |
| 23. 의료인 단체 설치신고                                                                                                                                                                                                             | 「의료법」 제28조                                                                                                                                                                                                                                                                    |     |

## [별표 3]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법」 제38조                                                      |     |
| 2. 건축물의 정확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지도·감독, 법령 또는 명령위반에 대한 조치<br>나. 건축관련 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된 건축물의 정확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변경)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br>다.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등의 수리<br>라. 업무처리실적 보고·검사 | 「하수도법」 제39조<br><br>「하수도법」 제34조<br><br>「하수도법」 제66조<br>「하수도법」 제69조 |     |
|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사무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4.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
| 5.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무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
| 6.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 7. 공단중소기업관리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     |
| 8. 토목공사의 설계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23조                                                       |     |
| 9.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 「도로법」 제40조 및 45조                                                 |     |
| 10.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     |
| 11. 연면적 1,650㎡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건축허가(대수선,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포함)<br>나. 착공신고 등 및 사용승인<br>다.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건축법」 제11조 및 제16조<br><br>「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br>「건축법」 제36조         |     |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 라. 건축신고(85㎡이하)<br>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br>바. 건축물대장관리 및 등본 발급 | 「건축법」 제14조<br>「건축법」 제20조<br><br>「건축법」 제38조 |     |

## [별표 4]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br>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br>나.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br>다.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2조<br><br>「주민등록법」 제7조<br><br>「주민등록법」 제24조<br>「주민등록법」 제30조                                                      |     |
| 2.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법」 제38조                                                                                                             |     |
| 3.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br>가. 요보호자(국민기초수급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조사<br><br>나. 수급권자 조사결과대장 작성비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아동복지법」 제3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br><br>「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7항, 제26조 및 제27조 |     |
| 4.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     |
| 5.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6.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
| 7. 불법쓰레기 지도 단속(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 8. 무단방치쓰레기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폐지 이유
- 사무위임의 근거 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 법규의 현행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별표 1)
  - 「의료법」, 「약사법」 등의 개정에 따른 정비 (별표 2)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폐지 및 「폐기물관리법」, 「도로법」,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정비 (별표 3)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별표 4)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48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 제·개·폐지 이유

- 건전한 광고문화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이던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 추가 (제23조)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업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관련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남동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제5조(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 제、개、폐지 이유

-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함 (제3조)
-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요건을 정함 (제4조)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제5조)

|     |
|-----|
| 조 례 |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50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 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민상(이하 “구민상” 이라 한다)에 관  
한 사항 “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 “으로 한  
다.

제2조 중 “구민상” 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이하 ” 구민상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봉사상 : 동장, 각급기관장, 사회단체장 및 구의회 의원
2. 효 행 상 : 동장 및 구의회 의원
3. 문화예술상 : 동장, 추천대상자 소속기관장·단체장 및 구의회 의원
4. 교육·체육상 : 동장, 추천대상자 소속기관장·단체장 및 구의회 의원
5. 산업진흥상 : 동장, 추천대상자 관련기관장·단체장 및 구의회 의원
6. 대민봉사상 : 동장, 추천대상자 관련기관장 및 구의회 의원

제6조제2항 중 “1인” 을 각각 “1명” 으로, “11인” 을 “1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구청장” 을 “구청장”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폐지 이유

-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자에 구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건설에 공이 뚜렷한 구민을 적극 추천하고 추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제처의 법령명칭 표준기준에 따라 조례명의 띄어쓰기 적용 및 조문상의 용어 정리
- 수상후보 추천자에 구의회 의원을 추가 (제4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방고용직  
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51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폐지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구에서 고용직을 임용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를 폐지함.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52호

**인천광역시남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폐지 이유**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를 폐지함.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00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00주민자치센터”를 “00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별표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0조 규정”을 “제10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및 제15조 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주민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 표 】

## 사용료 징수범위 및 요율표(제10조 관련)

## 1. 징수범위와 요율

## □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 시 설 명 | 용 도                    | 사용시간                   | 사 용 료                                    | 기 준 | 비 고                               |
|-------|------------------------|------------------------|------------------------------------------|-----|-----------------------------------|
| 다목적홀  | 강연, 토론·발표회<br>등 전용 사용시 | 월 ~ 금요일<br>09:00~18:00 | 냉·난방사용시<br>15천원 이하/1시간<br>(미사용시 10천원 이하) | 1시간 | 사용료는 1회 5시간 이내<br>기준<br>(초과시간 무료) |

## □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 구 분          | 기 준 | 수 강 료   |         |         |         | 비 고                 |
|--------------|-----|---------|---------|---------|---------|---------------------|
|              |     | 주 1회    | 주 2회    | 주 3회    | 주 4회 이상 |                     |
| 문화, 취미, 교양강좌 | 1개월 | 10천원 이하 | 15천원 이하 | 20천원 이하 | 25천원 이하 | 강좌별<br>재료비는<br>본인부담 |
| 생활체육         | "   | 15천원 이하 | 20천원 이하 | 25천원 이하 | 30천원 이하 |                     |

## 2. 감면기준과 비율

### □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①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 ④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 ①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 공연
- ②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

### □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
- ④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50% 감면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이외의 장애인 및 그 가족
-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제ㆍ개ㆍ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ㆍ개ㆍ폐지 이유

- 주민자치센터 시설ㆍ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감면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복지향상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감면 규정을 신설 (별표)
- 동사무소의 동주민센터 전환에 따라 용어정리 (제4조제1항, 제6조 제4항, 제15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5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직선거법” 을 “「공직선거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호 내지 7호” 를 “제5호부터 제7호” 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 제·개·폐지 이유

- 통장의 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법제처의 법령명칭 표준기준(2005년)에 따라 조문상의 용어 정리
- 통장활동 중 사건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항 신설  
(제13조제2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  
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10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로  
하고, “동법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  
59조”를 “같은 법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제59조”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  
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폐지 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추어 미비한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제처의 법령명칭 표준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용어 정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변경사항 정리 (제4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5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 의원인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3.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폐지 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여부 심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목적 (제1조)
- 기능 (제2조)
- 구성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 의견 청취 (제7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5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이하 ” 기금 “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공  
공근로”를 “자활근로”로, “수입금”을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노인복지법” 을 “「노인복지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용도)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6조제2항 중 “7인” 을 “7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6인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를 “6명 이내로 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 한다.

제13조 중 “남동구” 를 “구” 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로 하고, 제2호의2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를 신설하고, 제2호의3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화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을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나.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을 “자활사업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36조”를 “영 제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2조 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를 각각 “퍼센트”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43조제4호”를 “영 제26조의4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 제·개·폐지 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 및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상위법규 및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제1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
- 불합리한 절차 개선 (제22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5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로 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이하 ” 시설 “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2조 중 “시설”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 시설 “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5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이하 ” 구청장 “이라 한다)” 를 “구청장”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별표 2의 물리치료의 이용료란 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5조” 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 제、개、폐지 이유

- 「장애인복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인용된 규정을 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정하여 합법적 조례 운용을 도모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법제처 권고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관련 법규의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제1조, 제6조의 별표)
- 인용법규에 대한 낱표사용 등 법제처 권고 기준에 맞추어 조례 문구조정 (제3조, 제5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을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의 위촉위원” 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촉위원”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 제·개·폐지 이유

- 「장애인복지법」의 전부개정(2007.4.11)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규정을 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정하여 합법적 조례운용을 도모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법제처 권고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관련 법규의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제1조)
-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규정 (제6조, 제7조)
- 수당지급의 범위 명확화 (제10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를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  
한다.

제3조제1항 중 “10인 이상 20인” 을 “10명 이상 3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사회복지 관련국장” 을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구청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제4항 중 “10인 이상 20인” 을 “10명 이상 3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위촉하되, 당해업무 관련 담당, 의약팀장” 을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중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 “를 “대표협의체” 로 하고,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 을 “제3조제2항 및 제5항” 으로 하며, “명단은 공보” 를 “명단을 공보” 로 한다.

제11조 중 “협의체” 를 “대표협의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폐지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인원을 확대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심의、의결 조항 삭제 (제2조)
- 그 밖의 미비조항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61호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8조의2 제2항”을 “「수도법」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라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1.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38조의2”를 “「수도법」 제29조”로,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를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 제·개·폐지 이유

-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규 조항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용어를 법제처의 권고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합법적이고 명확한 조례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관련 법규의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제1조, 제2조, 제6조)
- 법제처의 권고기준에 맞추어 용어 정리 (제17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이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출연금 등 기타  
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설치자금” 을 “설치 비용에 대한 용자”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하고, “10인” 을 “10명” 으로 하며, “1/3이상” 을 “3분의 1이상”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금” 을 “기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 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 를 “퍼센트” 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 제、개、폐지 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조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상의 문구를 법제처의 권고기준을 준수하여 정비함으로써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제1조)
- 용어의 명확성 제고 (제2조)
- 법제처의 권고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리 (제3조, 제8조 등)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인천광역시남동구”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인천광역시남동구”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회”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용자대상업체) 기금의 용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 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폐지 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조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조정하고, 용자대상업체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제1조)
  - 용자대상업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 (제15조)
  - 법제처의 권고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리 (제20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농지위원회운영  
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64호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  
역시 남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인  
천광역시 남동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할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제49조”를 “제54조”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폐지 이유

-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조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상의 문구를 법제처의 권고기준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제4조부터 제6조)
- 법제처의 권고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리 (제1조)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65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4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 제、개、폐지 이유

- 인용조문을 명문화하여 합법적 조례 운용을 도모하고, 조례상 인용 법규에 대한 낯표사용 등 법제처 권고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인용조문 명문화 (제1조)
- 인용법규에 대한 낯표사용 등 법제처 권고 기준에 맞추어 조례 문구 조정 (제2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기타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주민자전거”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강구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책무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업무 담당국장, 자전거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2명
2. 유관기관 공무원(교육청, 경찰서 등)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 업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직을 원하는 때
2.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 제、개、폐지 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 (제5조 및 제6조)
- 주민에게 대여하는 주민자전거의 운영 (제8조)
-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제9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부터 제14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을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으로,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2이상” 을 “둘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 목의 1” 을 “각 목의 어느 하나” 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동법시행령” 을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29조” 를 “같은 법 제32조”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스티카” 를 “스티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일제(5부제) 참여 차량 : 30퍼센트 감면, 홀짝제(격일제) 참여 차량 : 50퍼센트 감면

7.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장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 하는 경우

7.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주차장 관리상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구조등이 가능한 경우”를 “재난구조 등이 가능하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제22조의2제1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제22조의2 및 제22조의4제1항 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조의3제1항 중 “%”는 각각 “퍼센트”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11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관련)

| 구 분   | 1회 주차권   |         | 전일주차권   | 월정기주차권   |
|-------|----------|---------|---------|----------|
|       | 최초 30분까지 | 15분초과마다 |         |          |
| 1 급 지 | 1,000원   | 500원    | 10,000원 | 100,000원 |
| 2 급 지 | 600원     | 300원    | 6,000원  | 60,000원  |
| 3 급 지 | 400원     | 200원    | 4,000원  | 40,000원  |
| 4 급 지 | 300원     | 100원    | 3,000원  | 30,000원  |

〈비 고〉

1.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삭제〉
3.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4.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5. 1구획은 국토해양부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6. 주차요금의 특례

- 가.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나. 구청장은 월정기 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10대이상의 다수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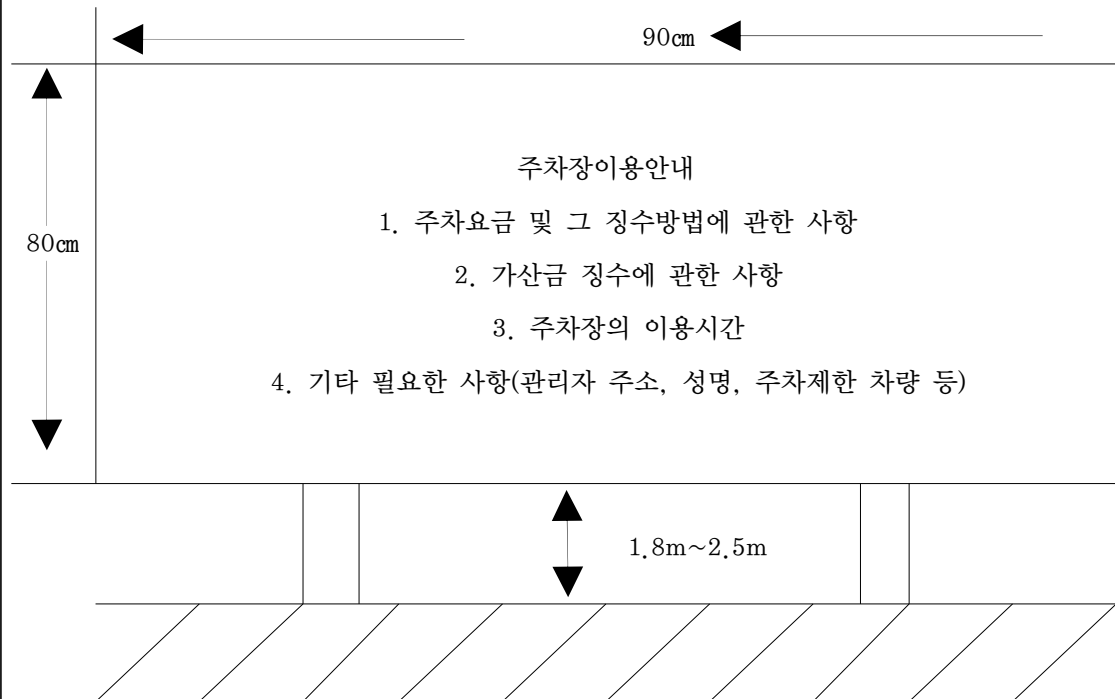
## [별표 3]

## 과징금 가감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 위반정도        | 기 본<br>과징금 | 가감후<br>과징금 |
|-------------------------------------------|-------------|------------|------------|
|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                | 위 반 시       | 50         | 45         |
|                                           | 연간 2회이상 위반시 |            | 50         |
|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 위 반 시       | 50         | 45         |
|                                           | 연간 2회이상 위반시 |            | 50         |
|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 개선명령 1회 위반시 | 50         | 45         |
|                                           | 개선명령 2회 위반시 |            | 50         |
|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 위 반 시       | 50         | 45         |
|                                           | 연간 2회이상 위반시 |            | 50         |

## [별표 4]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제8조제1항 관련)



- 비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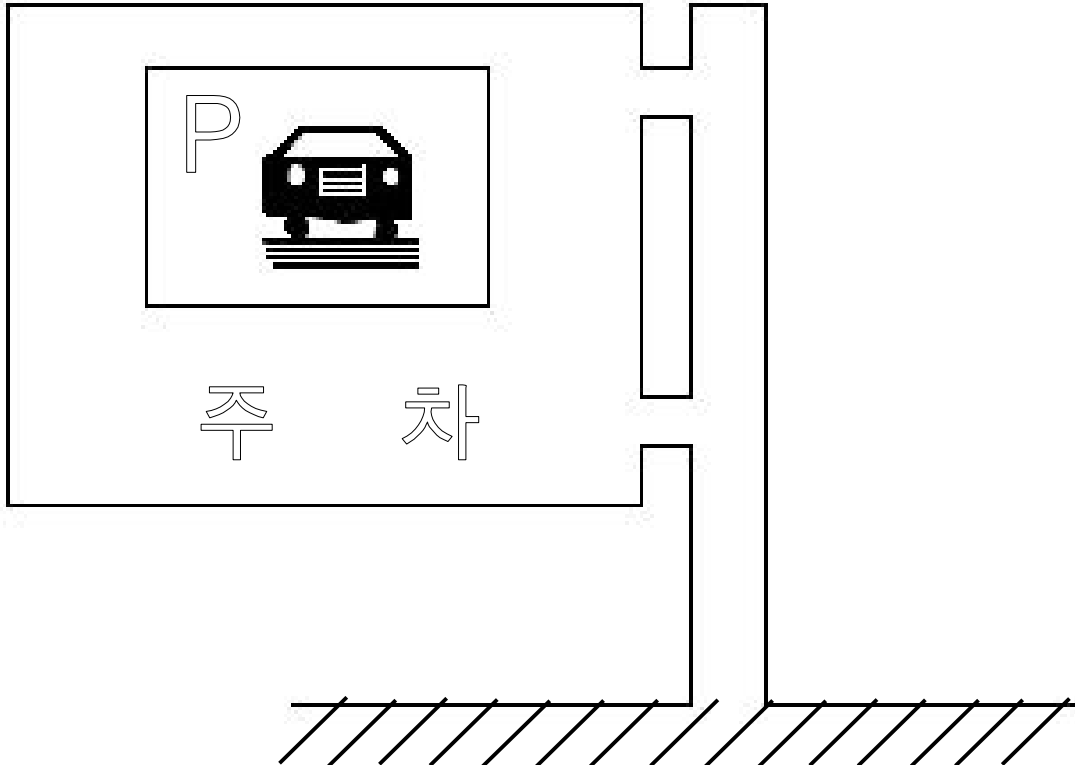
| 구 분     | 재 료   | 색 채 |        |
|---------|-------|-----|--------|
|         |       | 바 탕 | 글씨(고딕) |
| 노상주차장   | 알루미늄판 | 녹 색 | 흰 색    |
| 공영노외주차장 | 알루미늄판 | 녹 색 | 흰 색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에 준함

[별표 5]

## 노 외 주 차 장 표 시

(제8조제2항 관련)



- 비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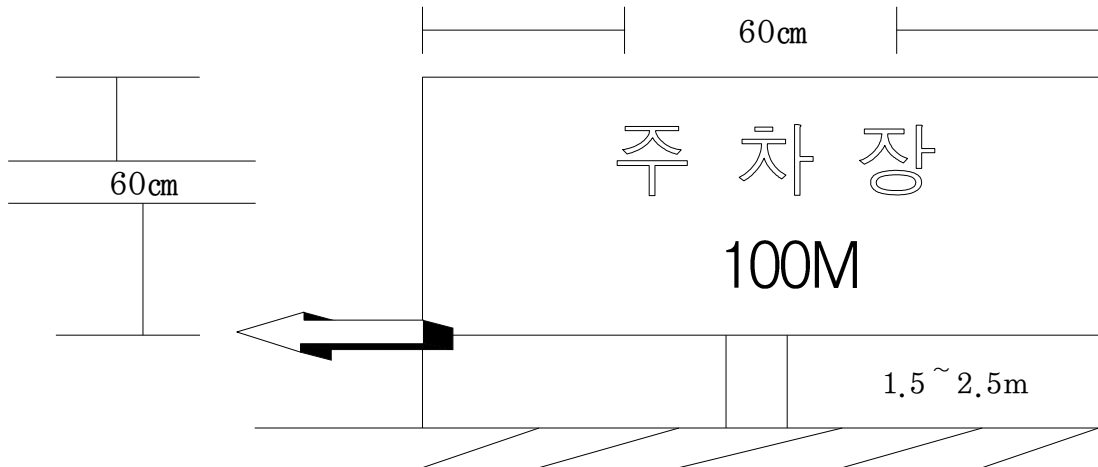
- 재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 × 세로 25cm)  
문 자(가로 17cm × 세로 17cm)
- 색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 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 [별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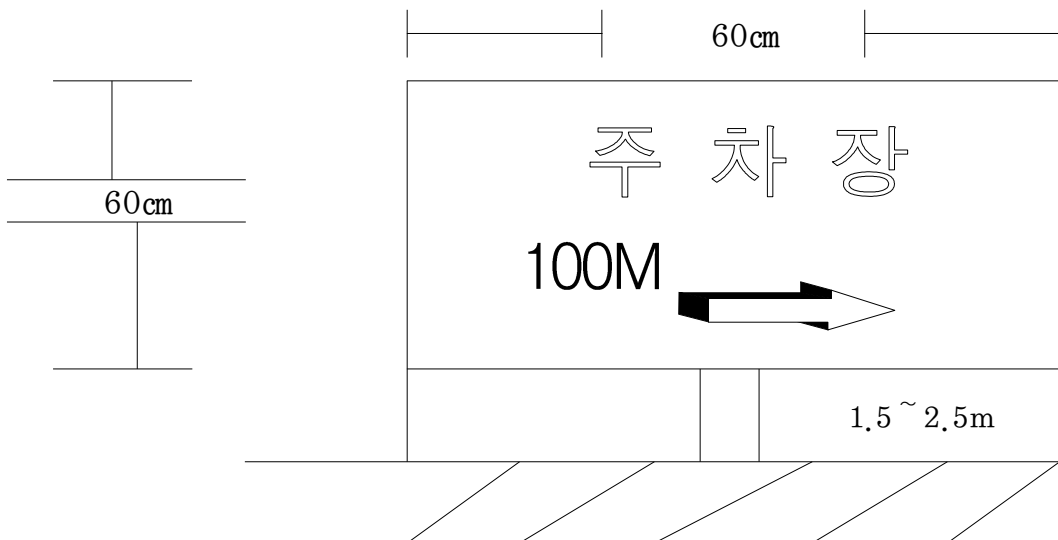
## 노 외 주 차 장 위 치 안 내 표 지

(제8조제4항 관련)

## ( 예 1 )



## ( 예 2 )



## - 비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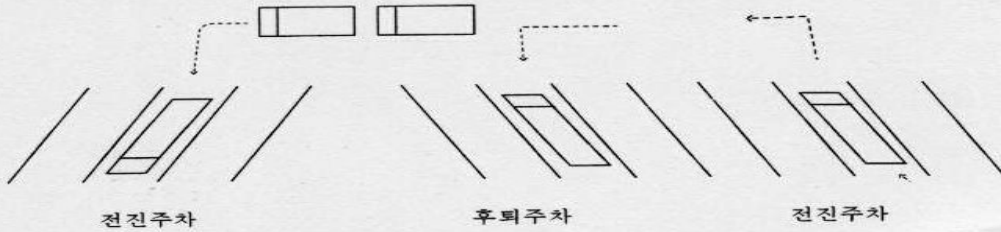
- 재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 주차방법 및 배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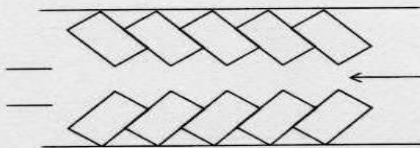
(제15조제1항 관련)

## 1. 주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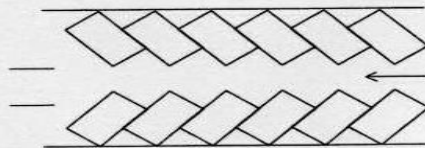


##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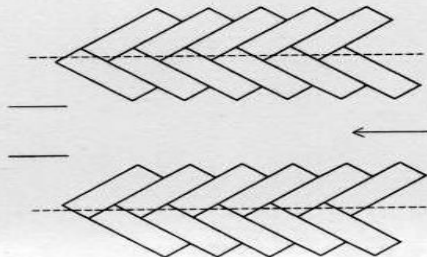
## 가. 3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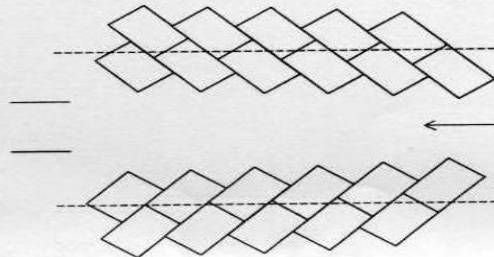
## 나. 45°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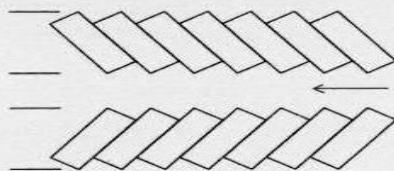
## 다. 45° 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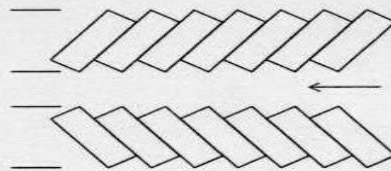
## 라. 45° 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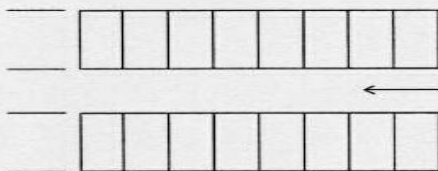
## 마. 6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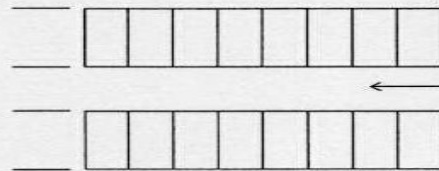
## 바. 60° 후퇴주차



## 사. 90° 전진주차



## 아. 90° 후퇴주차



[별표 8]

##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제19조제2항 관련)

(앞면)

##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 비 고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앞면)

##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 [별표 9]

## 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기준

(제20조 관련)

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나.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2)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 [별표 10]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 (제20조관련)



- 비 고 -

## 1. 규격

가. 표지판 :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32cm

## 2.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cm ~ 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별표 11]

## 과태료 부과기준 (제24조관련)

(단위 : 만원)

| 위반행위별                                      | 구분          | 과태료<br>금 액 |
|--------------------------------------------|-------------|------------|
|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 위 반 시       | 45         |
|                                            | 연간 2회이상 위반시 | 50         |
| 2. 주차장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위 반 시       | 45         |
|                                            | 연간 2회이상 위반시 | 50         |
| 3.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정도 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 위 반 시       | 45         |
|                                            | 연간 2회이상 위반시 | 50         |
| 4. 기계식 주차장의 검사필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br>부착하지 아니한 자 | 위 반 시       | 45         |
|                                            | 연간 2회이상 위반시 | 50         |

## - 비 고 -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 부과할 수 있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 제、개、폐지 이유

-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인용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추어 미비한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함.

## □ 주요내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 중앙 행정조직의 개편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령' 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 등)
- 인용 법규의 개정사항 반영으로 합법적 조례 운용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9조)
-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합리적 조례 운용 (제5조, 제7조, 제12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7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968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 법 “이라 한다)”을 “중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 사업 “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 사업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을 “중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 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 제18조 및 제 19조” 를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 을 “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을 “중전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시행령」 ”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감액” 을 “감면”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은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라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개、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폐지 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를 일부 개정하여 정수청산금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산금 감액규정 개정 (안 제17조제2항)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9- 1135호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년 7 월 27 일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채용분야 : 의료급여 관리사(간호사)
2. 채용인원 : 1명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40세 미만인 자로서 한글 및 엑셀 등 문서편집  
이 가능한 자
  - 채용기준

| 우선순위 | 자 격 요 건                                                                                                      |
|------|--------------------------------------------------------------------------------------------------------------|
| 공통요건 |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건의료 상담<br>사례관리(Case management)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br>(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 1순위  |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종합병원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
| 2순위  |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
| 3순위  |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4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

## 4.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월 154만원(4대보험 포함), 출장여비 별도지급
- 계약기간 : 2009. 9. 1. ~ 2010. 8. 31. (1년에 한해 재계약 가능)
- 근무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복무규정 :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수행업무
  - 과다의료 이용자의 적정의료 이용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업무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업무

##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6. 서류접수 및 합격자 통보

- 접수기간 : 2009. 8. 3. (월) ~ 2009. 8. 5.(수) ※ 공무원 근무시간 중 접수
- 접수장소 : 남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생활보장팀) ※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의료기관 임상경력증명서 1부, 기타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일시 : 2009. 8. 10. (월)
- 합격자 통보 : 2009. 8. 12. (수)(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7.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032-453-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9-1139호

##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전상혁 외 16건  
(붙임 “공고내역” 명단 참조)
  - 공 고 기 간 : 2009. 07. 27. ~ 2009. 08. 10.(15일간)
  - 공 고 내 용 :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교통불편, 법규위반)  
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  
달(세부내용 “공고내역” 참조)
1.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교통불편, 법규위반)에 따른 의  
견제출 통보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  
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  
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통보서를 수령대상자는 2009.08.10일까지 남동구청 자  
동차관리과(☎453-2912)로 오셔서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만일 통지한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  
명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  
032-453-2912, FAX : 032-453-2919)으로 전송 또는 지참  
하여 방문하시는 등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시에  
는 행정절차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예고된 행정처분 사항대로  
처리되며 또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07월 2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교통불편신고 사전 행정처분 내역(공시송달 및 재발송) |          |                  |                                |           |                                                |            |             |                           |                                                    |
|-------------------------------|----------|------------------|--------------------------------|-----------|------------------------------------------------|------------|-------------|---------------------------|----------------------------------------------------|
| 접수<br>번호                      | 접수<br>일자 | 위 반 사 항          |                                |           | 업체명<br>은 전 자                                   | 주 소        | 예견된행정처<br>분 | 관련법근거                     | 관련기관                                               |
|                               |          | 일시               | 장소                             | 차량번호      | 신고내용                                           |            |             |                           |                                                    |
| 계                             |          |                  | 총17건(공시송달 및<br>재발송 : 17건)      |           | 교통불편신<br>고 사전<br>행정처분<br>내역(공시송<br>달 및<br>재발송) |            |             |                           |                                                    |
| 4                             | 01.06    | 01.06(<br>08:55) | 구월4동사무소~만월중학<br>교              | 인천30바9495 | 승차거부(불<br>친절)                                  | 남동구<br>간석동 | 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전화접수전                                              |
| 7                             | 01.16    | 01.14(<br>17:35) | 공촌삼거리                          | 인천30바4883 | 승차거부                                           | 남동구<br>간석동 | 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시청<br>교통관리과-879(09.01.16)                          |
| 15                            | 01.29    | 01.28(<br>22:00) | 가정동<br>한국아파트~가좌삼거리             | 인천30바3969 | 부당요금징<br>수                                     | 남동구<br>구월동 | 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시청<br>자치행정과-1685(09.01.29)<br>민원지적과-1718(09.01.29) |
| 58                            | 03.23    | 03.22(<br>00:40) | 송내역~심정동<br>보훈회관(동암남부역에서<br>하차) | 인천32바1658 | 카드결제거<br>부(오류)                                 | 남동구<br>구월동 | 과태료1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시<br>시민봉사과-764(09.03.23)<br>민원지적과-5551(09.03.23)   |
| 65                            | 03.31    | 03.25<br>8:38    | 백운역 - 부평역(부평역<br>지구대)          | 인천30바8782 | 카드결제거<br>부                                     | 남동구<br>구월동 | 과태료1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시교통관리과-4765(09.3.31)                               |

|     |        |              |                                     |           |                 |               |            |         |                           |                                                        |
|-----|--------|--------------|-------------------------------------|-----------|-----------------|---------------|------------|---------|---------------------------|--------------------------------------------------------|
| 77  | 04. 16 | 04.16(16:00) | 나누리병원 버스정류장<br>연안부두                 | 인천30바7452 | 합승              | 이만덕           | 남동구<br>만수동 | 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부평구<br>교통행정과-16236(04.16)<br>시<br>교통관리과-6142(09.04.27) |
| 80  | 04. 27 | 04.24(17:50) | 씨월드(혜수탕)옆(국민은행 앞)                   | 인천30바1019 | 승차거부            | 김동준           | 남동구<br>간석동 | 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시<br>교통관리과-6142(09.04.27)                              |
| 90  | 05. 07 | 04.21(15:00) | 인천 구치소~구월동<br>다이아나나이트               | 인천30바5504 | 부당요금징<br>수(불친절) | 김광춘           | 남동구<br>간석동 | 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전화접수전                                                  |
| 91  | 05. 07 | 05.07(18:30) | 화평파출소~울목동사무소                        | 인천31바1668 | 불친절(카드<br>결제거부) | 강승홍(성<br>진기업) | 부평구<br>심정동 | 과태료1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남동구종합민원신고센터(<br>민원지적과)                                 |
| 95  | 05. 12 | 05.11(21:40) | 산곡 롯데마트~백마강<br>입구                   | 인천31바1668 | 불친절             | 강승홍(성<br>진기업) | 부평구<br>심정동 | 경고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    | 시<br>시민봉사과-2452(09.05.1<br>2)민원지적과-9398(09.0<br>5.12)  |
| 121 | 06. 09 | 06.06(00:38) | 부천소사사거리~소사초동<br>학교사거리~풍년8길<br>양우@ 앞 | 인천31바1607 | 영업구역 외<br>영업    | 양승인(성<br>진기업) | 남동구<br>간석동 | 과징금4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4조제3항  | 시<br>교통관리과-8285(09.06.09)                              |
| 118 | 05. 06 | 05.02(10:23) | 송내남부역택시회차로 내                        | 인천32바1458 | 장기 정차여<br>객유치   | 송남주           | 남동구<br>만수동 | 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부천시<br>교통관리과-10941(2009.<br>05.06)                     |
| 123 | 05. 06 | 05.02(11:16) | 송내남부역택시회차로 내                        | 인천30바5437 | 장기 정차여<br>객유치   | 정충교           | 남동구<br>만수동 | 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부천시<br>교통관리과-10941(2009.<br>05.06)                     |
| 129 | 05. 11 | 05.06(09:58) | 송내남부역택시회차로 내                        | 인천30바1677 | 장기 정차여<br>객유치   | 권현수           | 남동구<br>구월동 | 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부천시<br>교통관리과-11375(2009.<br>05.11)                     |
| 144 | 05. 26 | 05.16(11:25) | 송내남부역택시회차로 내                        | 인천30바1938 | 장기 정차여<br>객유치   | 김근식           | 남동구<br>만수동 | 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부천시<br>교통관리과-12754(2009.<br>05.26)                     |

|     |       |                  |              |           |                       |               |            |                    |                           |                                    |
|-----|-------|------------------|--------------|-----------|-----------------------|---------------|------------|--------------------|---------------------------|------------------------------------|
| 130 | 05.11 | 05.06(<br>10:05) | 송내남부역택시회차로 내 | 인천31바1648 | 복장 위반장<br>기정차여객<br>유치 | 채정병(성<br>진기업) | 남동구<br>만수동 | 과태료10만원<br>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부천시<br>교통관리과-11375(2009.<br>05.11) |
| 134 | 05.11 | 05.06(<br>10:37) | 송내남부역택시회차로 내 | 인천31바1648 | 장기 정차여<br>객유치         | 채정병(성<br>진기업) | 남동구<br>만수동 | 과태료20만원            | 여객자동차<br>운송사업법<br>제26조제1항 | 부천시<br>교통관리과-11375(2009.<br>05.11)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146호

##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9. 8. 11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9. 7. 28 ~ 2009. 8. 11
2. 대상 자동차

| 신 청 대 상 차 량   |     |               | 이해관계내용                        | 이해관계인 | 송 달 지      |
|---------------|-----|---------------|-------------------------------|-------|------------|
| 자 동 차<br>등록번호 | 성 명 | 사 용 본 거 지     |                               |       |            |
| 인천3머5081      | 최인규 | 인천 남구 주안동     | 인천지방법원<br>(95카단30262)         | 우경일   | 인천 부평구 부개동 |
| 인천30누2652     | 김진혁 | 인천 남동구<br>만수동 | 수원지방법원<br>광명시법원<br>(98카단2408) | 서창석   | 경기 광명시 철산동 |
| 인천30나4117     | 강월례 | 인천 남동구<br>구월동 | 서울지방법원<br>북부지원<br>(98카단19765) | 신형일   | 서울 강북구 번동  |
| 인천80터3339     | 박봉만 | 인천 남동구<br>간석동 | 인천지방법원<br>(2007카단17047)       | 안정숙   | 인천 남구 주안동  |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453-2941)

2009. 7.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147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임시검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09.7.29.

##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9.7.29 ~ 2009.8.20

2.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임시검사명령

나. 적용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다.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처분하고<br>자하는<br>내용 | 최후주소                       | 원 인     |                    |                   |                                 |
|------------------|--------------------|-------------------|----------------------------|---------|--------------------|-------------------|---------------------------------|
|                  |                    |                   |                            | 차량번호    | 적발일시               | 적발장소              | 위반내용                            |
| 조세호              | 78****             | 임시검사<br>명령        | 만수동 29<br>주공아파트<br>101-304 | 51무4058 | 2009.6.9           | 논현동<br>434앞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양현모              | 83****             | 임시검사<br>명령        | 간석동 478-3<br>세종빌리지 C-302   | 80거1670 | 2009.5.25<br>01:15 | 구월동<br>70-14번지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조병규<br>(조성<br>철) | 57****(<br>80****) | 임시검사<br>명령        | 구월동 1117-16<br>A동 202호     | 59너3412 | 2009.5.70<br>8:03  | 고잔동 671<br>사리골사거리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                    |            |                                     |               |                    |                               |                                       |
|------------------|--------------------|------------|-------------------------------------|---------------|--------------------|-------------------------------|---------------------------------------|
| 손찬기<br>(도재<br>만) | 38****<br>(62****) | 임시검사<br>명령 | 남촌동 320번지<br>2호 풍림아파트<br>102-806    | 28러4547       | 2009.5.28<br>05:45 | 고잔동<br>627-6                  | 불법소음기<br>장착(자동차관리<br>법제 34조)          |
| 김광송<br>(김상<br>태) | 49****<br>(81****) | 임시검사<br>명령 | 논현동 643-1<br>논현휴먼시아<br>범마을 206-1308 | 인천32터<br>4910 | 2009.5.31<br>22:25 | 남촌동<br>590-7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안진목              | 76****             | 임시검사<br>명령 | 만수동 5-115<br>302호                   | 04수5709       | 2009.5.22<br>04:16 | 구월동<br>1264-39 앞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박미식<br>(유종<br>봉) | 61****<br>(82****) | 임시검사<br>명령 | 만수동 109번지<br>221호 엄지빌라<br>가동 102호   | 86보8183       | 2009.5.31<br>6:35  | 만수동 111앞                      | 돌출타이어<br>장착(자동차관리<br>법 제34조)          |
| 최서나              | 77****             | 임시검사<br>명령 | 만수동 2번지 21호<br>25신한아파트 B동<br>202호   | 18두4250       | 2009.5.25<br>02:15 | 만수동 897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박선미<br>(이동<br>기) | 67****<br>(62****) | 임시검사<br>명령 | 구월동 1118번지<br>6호 2층동                | 03보3740       | 2009.6.11<br>22:00 | 도림동<br>629번지<br>도림주공<br>사거리 앞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김수남<br>(나정<br>복) | 65****<br>(58****) | 임시검사<br>명령 | 만수동 943번지 15<br>하이다세대주택<br>4-101    | 86소3888       | 2009.5.29<br>11:15 | 만수동 단속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이영섭              | 59****             | 임시검사<br>명령 | 구월동 1355번지<br>1호                    | 25나6094       | 2009.5.25          | 구월3동<br>1359-18               | 광폭타이어<br>장착(자동차관리<br>법제<br>34조)       |
| 장덕순<br>(조경<br>현) | 43****<br>(68****) | 임시검사<br>명령 | 만수동 1번지<br>286호 대명빌라<br>5동 301호     | 49어1220       | 2009.5.31<br>07:30 | 만수동875-1<br>번지                | 돌출 광폭타이어<br>장착(자동차관리<br>법제34조)        |
| 유환(<br>허면행<br>)  | 57****<br>(80****) | 임시검사<br>명령 | 구월동 1211-12<br>그린맨션 101호            | 86노1022       | 2009.6.31<br>4:10  | 구월동<br>1264번지 앞               | 차량적제함이<br>활어탱크로<br>개조(자동차관리<br>법제34조) |
| 최봉수              | 78****             | 임시검사<br>명령 | 논현동 633-1<br>논현휴먼시아<br>502동 1304호   | 09누8913       | 2009.6.40<br>4:00  | 논현동 635<br>주공 3단지<br>앞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오종현              | 66****             | 임시검사<br>명령 | 논현동 599번지<br>1호 주공아파트<br>1405-1405  | 05어9977       | 2009.6.11          | 구월동<br>70-19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윤창희              | 70****             | 임시검사<br>명령 | 만수동 927번지<br>6호 신화빌라트<br>1-303      | 93터6525       | 2009.6.41<br>0:10  | 만수동<br>926-7 앞                | 격벽<br>제거(자동차관리<br>법제34조)              |
| 김기정              | 79****             | 임시검사<br>명령 | 간석동 99번지 5호<br>샤인빌 701호             | 52주9333       | 2009.6.8           | 간석동<br>271-5 앞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이영숙<br>(이창<br>호) | 65****<br>(64****) | 임시검사<br>명령 | 서창동 545<br>현대모닝사이드아<br>파트 308 - 103 | 86소4951       | 2009.5.25<br>12:00 | 만수동 1025<br>앞                 | 보호봉, 격벽제거<br>(자동차관리법제<br>34조)         |
| 남상익              | 79****             | 임시검사<br>명령 | 만수동 111번지<br>332호                   | 62무5235       | 2009.5.25<br>22:00 | 만수동 일대                        | 전조등 HID<br>불법장착(자동차<br>관리법제34조)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9-1152호

##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가격조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9. 7. 30.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 결정·공시

- 대 상 토 지 : 59필지 (가격조정 토지) 【내역 별첨】
- 기 준 일 : 2009년 1월 1일
-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것인 바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  
(032)453-2484~, 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의 가격조정 내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단위:원/㎡]

| 순번 | 토지소재지       | 결정지가      | 조정지가      | 비고 |
|----|-------------|-----------|-----------|----|
| 1  | 구월동 760-3   | 568,000   | 227,000   |    |
| 2  | 구월동 724-7   | 210,000   | 224,000   |    |
| 3  | 구월동 726-9   | 151,000   | 221,000   |    |
| 4  | 구월동 726-10  | 151,000   | 221,000   |    |
| 5  | 구월동 727-1   | 539,000   | 552,000   |    |
| 6  | 구월동 727-5   | 151,000   | 221,000   |    |
| 7  | 구월동 727-6   | 151,000   | 221,000   |    |
| 8  | 구월동 728-2   | 158,000   | 164,000   |    |
| 9  | 구월동 728-3   | 188,000   | 247,000   |    |
| 10 | 구월동 729-4   | 164,000   | 175,000   |    |
| 11 | 구월동 729-5   | 178,000   | 247,000   |    |
| 12 | 구월동 1195    | 2,890,000 | 2,730,000 |    |
| 13 | 구월동 1195-1  | 2,890,000 | 2,730,000 |    |
| 14 | 구월동 1195-2  | 2,890,000 | 2,730,000 |    |
| 15 | 간석동 79-9    | 698,000   | 824,000   |    |
| 16 | 간석동 224-589 | 847,000   | 992,000   |    |
| 17 | 간석동 281-8   | 2,410,000 | 2,530,000 |    |
| 18 | 간석동 281-9   | 2,410,000 | 2,530,000 |    |
| 19 | 만수동 1-35    | 781,000   | 840,000   |    |
| 20 | 만수동 72-13   | 1,920,000 | 1,610,000 |    |
| 21 | 만수동 696-3   | 615,000   | 654,000   |    |
| 22 | 운연동 262-19  | 479,000   | 532,000   |    |
| 23 | 장수동 388-5   | 154,000   | 243,000   |    |

| 순번 | 토지소재지      | 결정지가    | 조정지가    | 비고 |
|----|------------|---------|---------|----|
| 24 | 장수동 411    | 532,000 | 483,000 |    |
| 25 | 장수동 산120-2 | 27,500  | 35,000  |    |
| 26 | 서창동 46     | 153,000 | 165,000 |    |
| 27 | 남촌동 177-1  | 180,000 | 201,000 |    |
| 28 | 남촌동 186-39 | 128,000 | 141,000 |    |
| 29 | 남촌동 186-41 | 128,000 | 141,000 |    |
| 30 | 남촌동 517-1  | 205,000 | 216,000 |    |
| 31 | 도림동 34-7   | 379,000 | 720,000 |    |
| 32 | 도림동 94-6   | 468,000 | 720,000 |    |
| 33 | 도림동 94-8   | 377,000 | 473,000 |    |
| 34 | 도림동 95-10  | 328,000 | 469,000 |    |
| 35 | 도림동 122    | 96,200  | 100,000 |    |
| 36 | 도림동 212-6  | 57,700  | 159,000 |    |
| 37 | 도림동 212-7  | 57,700  | 159,000 |    |
| 38 | 도림동 413-7  | 539,000 | 568,000 |    |
| 39 | 도림동 503    | 153,000 | 161,000 |    |
| 40 | 도림동 512-1  | 376,000 | 428,000 |    |
| 41 | 도림동 512-3  | 376,000 | 428,000 |    |
| 42 | 도림동 558-8  | 199,000 | 247,000 |    |
| 43 | 도림동 559-3  | 54,400  | 247,000 |    |
| 44 | 수산동 5-1    | 99,000  | 153,000 |    |
| 45 | 수산동 13-31  | 249,000 | 260,000 |    |
| 46 | 수산동 394-3  | 153,000 | 176,000 |    |
| 47 | 수산동 398-6  | 153,000 | 176,000 |    |
| 48 | 수산동 399    | 229,000 | 270,000 |    |
| 49 | 수산동 400    | 177,000 | 186,000 |    |
| 50 | 수산동 425-1  | 152,000 | 175,000 |    |

| 순번 | 토지소재지      | 결정지가    | 조정지가      | 비고 |
|----|------------|---------|-----------|----|
| 51 | 수산동 426-1  | 152,000 | 175,000   |    |
| 52 | 수산동 432    | 152,000 | 175,000   |    |
| 53 | 수산동 435    | 135,000 | 155,000   |    |
| 54 | 수산동 593-6  | 160,000 | 167,000   |    |
| 55 | 논현동 산19-4  | 31,700  | 34,900    |    |
| 56 | 고잔동 172-2  | 968,000 | 977,000   |    |
| 57 | 고잔동 172-4  | 968,000 | 977,000   |    |
| 58 | 고잔동 182-10 | 997,000 | 1,100,000 |    |
| 59 | 고잔동 192-3  | 749,000 | 661,000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9-11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김성근 외 9인(13건)  
(붙임 “공고내역” 명단 참조)
- 공 고 기 간 : 2009. 08. 01. ~ 2009. 08. 17.(17일간)
- 공 고 내 용 :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교통불편, 법규위반)  
에 따른 정처분 통보서·고지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  
달

1.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교통불편,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미수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고지서 수령대상자께서는 공고내역 납부기일(공고내역 참조)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453-2912)로 오셔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 농협 또는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07월 3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행정처분 내역서(공시송달)

| 접<br>수<br>번<br>호 | 접수<br>일자 | 위 반 사 항      |                |           |          | 입체명<br>운전자 | 운전자<br>주민번호 | 의견제출 | 행정처분    | 납부기일      | 관련기관                                                  |
|------------------|----------|--------------|----------------|-----------|----------|------------|-------------|------|---------|-----------|-------------------------------------------------------|
|                  |          | 일시           | 장소             | 차량번호      | 신고내용     |            |             |      |         |           |                                                       |
| 70               | 04.01    | 03.27(09:48) | 송내남부역<br>택시회차로 | 인천30바7993 | 장기정차여객유치 | 김성근        | 571009-     | X    | 과태료20만원 | 2009.8.17 | 부천시<br>교통관리과-8188<br>(09.04.01)                       |
| 75               | 04.01    | 03.28(10:24) | 송내남부역<br>택시회차로 | 인천30바3610 | 장기정차여객유치 | 정태일        | 421215-     | ○    | 과태료10만원 | 2009.8.17 | 부천시<br>교통관리과-8188<br>(09.04.01)                       |
| 83               | 04.01    | 03.31(10:48) | 송내남부역<br>택시회차로 | 인천30바2976 | 장기정차여객유치 | 김운성        | 600802-     | ○    | 과태료10만원 | 2009.8.17 | 부천시<br>교통관리과-8188<br>(09.04.01)                       |
| 88               | 04.09    | 04.03(10:02) | 송내남부역<br>택시회차로 | 인천30바9676 | 장기정차여객유치 | 김금용        | 520614-     | ○    | 과태료10만원 | 2009.8.17 | 부천시<br>교통관리과-8825<br>(09.04.09)                       |
| 95               | 04.09    | 04.05(10:30) | 송내남부역<br>택시회차로 | 인천32바1936 | 장기정차여객유치 | 나찬우        | 590706-     | ○    | 과태료10만원 | 2009.8.17 | 부천시<br>교통관리과-8825<br>(09.04.09)                       |
| 104              | 04.24    | 04.18(10:49) | 송내남부역<br>택시회차로 | 인천30바9676 | 장기정차여객유치 | 김금용        | 520614-     | ○    | 경고      |           | 부천시<br>교통관리과-1017<br>3(09.04.24)                      |
| 105              | 04.24    | 04.21(09:50) | 송내남부역<br>택시회차로 | 인천30바9676 | 장기정차여객유치 | 김금용        | 520614-     | ○    | 과태료20만원 | 2009.8.17 | 부천시<br>교통관리과-1017<br>3(09.04.24)                      |
| 61               | 03.23    | 03.19(15:00) | 연수4단지          | 인천30바5207 | 부계위반     | 이근식        | 521216-     | X    | 과징금20만원 | 2009.8.17 | 부천시<br>교통관리과-4303<br>(09.03.23)                       |
| 84               | 05.01    | 04.30(21:30) | 작전역            | 인천30바2812 | 승차거부     | 손태진        | 501115-     | ○    | 주의      |           | 민원지적과-8719<br>(09.05.01)시<br>시민봉사과-2134<br>(09.05.01) |

|     |       |              |                     |           |             |     |             |   |         |             |                                    |
|-----|-------|--------------|---------------------|-----------|-------------|-----|-------------|---|---------|-------------|------------------------------------|
| 85  | 05.04 | 04.25(21:40) | 학익시거리               | 인천30바9356 | 부당요금징수(불친절) | 안준영 | 410223<br>- | ○ | 경고      |             | 시<br>교통관리과-6444<br>(09.05.04)      |
| 127 | 05.11 | 05.04(11:23) | 송내남부역<br>택시회차로<br>내 | 인천30바4258 | 장기정차여객유치    | 김관영 | 501026<br>- | ○ | 과태료10만원 | 2009. 8. 24 | 부천시<br>교통관리과-1137<br>5(2009.05.11) |
| 133 | 05.11 | 05.06(10:28) | 송내남부역<br>택시회차로<br>내 | 인천32바1936 | 장기정차여객유치    | 나찬우 | 590706<br>- | X | 과태료20만원 | 2009. 8. 24 | 부천시<br>교통관리과-1137<br>5(2009.05.11) |
| 136 | 05.15 | 05.09(10:36) | 송내남부역<br>택시회차로<br>내 | 인천30바2644 | 장기정차여객유치    | 임성재 | 520410<br>- | ○ | 과태료10만원 | 2009. 8. 24 | 부천시<br>교통관리과-1190<br>5(2009.05.15)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15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 정비 (안 제2조 등)
-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 정비 (안 제2조 등)
-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삭제 (안 제28조)
- 별지 서식 삭제 및 개정
  - 별지 제10호의1부터 별지 제10호의4 (삭제)
  - 별지 제16호 (개정)
  - 별지 제17호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경영재정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2273, FAX 453-22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 별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 밖의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주요내용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 정비 (안 제2조 등)
-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 정비 (안 제2조 등)
-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삭제 (안 제28조)
- 별지 서식 삭제 및 개정
  - 별지 제10호의1부터 별지 제10호의4 (삭제)
  - 별지 제16호 (개정)
  - 별지 제17호 (개정)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주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2. 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
3. 구 본청 및 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 이외의 재산과 일반재산 및 구유재산관리 총괄사무 : 재산관리업무 주관부서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남동구”를 “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2조 중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2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1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 제목 중 “행정·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한다.

별지 제17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서식]

### 대부(사용허가) 및 매수신청서

|                                                   |     |                                   |                 |         |                   |
|---------------------------------------------------|-----|-----------------------------------|-----------------|---------|-------------------|
| 공유재산                                              |     | [ ( )사용수익허가<br>( )대 부<br>( )매 수 ] |                 | 신청서     |                   |
| 신청인                                               | ①성명 |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④전화번호   |                   |
| ⑤신청내용                                             |     |                                   |                 |         |                   |
| 재 산 의 표 시                                         |     |                                   | 신청면<br>적<br>(㎡) | 용 도     | 사용인·대부자 또는<br>매수자 |
| 소 재 지                                             | 지 목 | 지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                                   |                 |         |                   |
| [ ( )사용수익허가<br>( )대부 ( )매수 ]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                                   |                 |         |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 <u>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u>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br>-----<br>----- 「 <u>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u> 」 -----<br>-----                                                                  |
|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u>남동구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 소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u> |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u>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주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u> |
| ② <u>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u>                                                        | ② <u>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u>                                                                                 |
| 1. <u>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u>                                                                               | 1. <u>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u>                                                                                                    |
| 2. <u>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소·동의 장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한다)</u>                                                  | 2. <u>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u>                                                                          |
| 3. <u>본청 및 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u>                                                                 | 3. <u>구 본청 및 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u>                                                                                      |
| 4. <u>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u>                    | 4. <u>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u>                                  |

| 현행                                                                                                                                                                                                                                                                                                                                                                                                                                                                                                                                                                    | 개정안                                                                                                                                                                                                                                                                                                                                                                                                                                                                                             |
|-----------------------------------------------------------------------------------------------------------------------------------------------------------------------------------------------------------------------------------------------------------------------------------------------------------------------------------------------------------------------------------------------------------------------------------------------------------------------------------------------------------------------------------------------------------------------|-------------------------------------------------------------------------------------------------------------------------------------------------------------------------------------------------------------------------------------------------------------------------------------------------------------------------------------------------------------------------------------------------------------------------------------------------------------------------------------------------|
| <p>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br/>의회사무국장</p> <p>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p> <p>7. 1호 내지 6호 이외의 재산과 잡종재산 및<br/>구유재산관리 총괄사무 : 재산관리주무과장</p> <p>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br/>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br/>인정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 ③<br/>(생략)</p> <p>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br/>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할 필요가<br/>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br/>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토록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br/>① ~ ② (생략)</p> <p>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남동구의 명의로<br/>등기, 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br/>한다.</p> <p>④ ~ ⑥ (생략)</p> | <p>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p> <p>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 부서장</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 이외의 재산과 일반재산<br/>및 구유재산관리 총괄사무 : 재산관리업무 주관부서장</p> <p>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br/>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br/>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br/>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 ③<br/>(현행과 같음)</p> <p>④ ----- 행정재산<br/>----- 일반재산<br/>-----<br/>-----.</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br/>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구<br/>-----.</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br>① (생략)<br>② 제15조제1항에 용도폐지된 재산을 <u>잡종재산</u> 으로<br>인계하고자 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 제9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br>① (현행과 같음)<br>② ----- <u>일반재산</u><br>-----.                      |
| 제1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u>조례</u><br>제63조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br>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br>지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br>“조례” 라 한다) -----.           |
| 제15조(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의 용도폐지) ①<br>재산관리관은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의 용도를<br>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br>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br>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br>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②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br>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제15조( <u>행정재산</u> 의 용도폐지) ① ----- 행정재산<br>-----<br>-----<br>-----<br>-----<br>-----. |
| ③ <u>잡종재산</u> 의 용도지정이나 변경의 경우에도 제1항<br>내지 제2항과 같다.                                                                                                                                                                                  | ② <u>행정재산</u><br>-----<br>-----.                                                     |
| 제24조(증감이동보고)<br>① ~ ② (생략)<br>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br>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br>“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br>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br>한다.                                                                            | ③ <u>일반재산</u><br>-----<br>-----.                                                     |
|                                                                                                                                                                                                                                     | 제24조(증감이동보고)<br>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br>-----<br><u>법</u><br>-----<br>-----.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④ 재산관리관은 이 조 각 항의 결과를 “<u>인천광역시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u>” (이하 “<u>조례</u>” 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 주무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7조(대부계약) <u>잡종재산</u>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p> <p>제28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u>조례 제40조의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0호의1서식)</u><br/> 2. <u>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0호의2서식)</u><br/> 3. <u>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0호의3서식)</u><br/> 4. <u>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0호의4서식)</u></p> <p>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 <p>④ ----- <u>조례</u><br/> -----<br/> -----<br/> -----<br/> -----<br/> . 제27조(대부계약) <u>일반재산</u><br/> -----<br/> . <br/> <br/> <u>〈 삭 제 〉</u></p>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161호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94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08. 01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8. 1 ~ 2009. 8. 14
2. 의견제출기간 : 2009. 8. 14일까지.
3. 송달내역 : 김이섭 (86소4120) 등 358건(별첨 명단 참조)
4. 기타 :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과(☎ 032-453-2655) 끝.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대상자 세부내역

| 순번 | 과목명       | 등기번호          | 납부자성명                  | 물건명           | 우편번호    | 주소                                                   | 부과금액    |
|----|-----------|---------------|------------------------|---------------|---------|------------------------------------------------------|---------|
| 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1998 | 김이섭                    | 86소4120       | 429-020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br>704번지 18호 2통 1반<br>신세계아트빌라 지층<br>B01호 | 280,000 |
| 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1999 | 최양엽                    | 인천31도9<br>609 | 403-100 | 인천광역시 부평구<br>부개동 327번지 2호<br>23통 6반 202호             | 120,000 |
| 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00 | 이윤중                    | 07다4569       | 403-080 | 인천광역시 부평구<br>갈산동 12번지 2통<br>1반                       | 300,000 |
| 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01 | 석안옥                    | 08주3575       | 403-080 | 인천광역시 부평구<br>갈산동 19번지 8호<br>2통 4반 동원주택 1동<br>503호    | 270,000 |
| 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02 | (주)명일정공                | 02수3683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712번지 15호                           | 140,000 |
| 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03 | (주)코스라인                | 26조6110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719번지 13호<br>142블럭 14롯데             | 20,000  |
| 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04 | 주식회사<br>씨엠테크           | 10나7196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669번지 9호<br>남동공단 92블럭 10롯데          | 20,000  |
| 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1825 | 하나목재<br>주식회사           | 26조8473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738번지 3호<br>남동공단 161B-4L            | 20,000  |
| 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07 | (주)<br>우신가구            | 인천32너1<br>163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256번지                               | 20,000  |
| 1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08 | 얼라이드레<br>이테크놀로<br>지(주) | 86노4310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705번지 2호<br>남동공단 134B-3L            | 20,000  |
| 1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09 | 풍전파렛트<br>(주)           | 인천32거9<br>115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694번지 4호<br>남동공단 131블럭 5롯데          | 20,000  |
| 1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11 | 주식회사<br>알본             | 25고2583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719번지 3호<br>남동공단 142BL-3LT          | 20,000  |
| 1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12 | (주)<br>하나정밀            | 05주6770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642번지 11호                           | 60,000  |
| 1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15 | (주)현진                  | 인천30무1<br>435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725번지<br>10호 남동공단 152-10            | 200,000 |
| 1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16 | 양용소                    | 27무5488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710번지 19통<br>4반                     | 280,000 |
| 1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17 | (주)<br>대창엔지니<br>어링     | 86주8469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715번지 6호<br>남동공단 146B-7L            | 20,000  |
| 1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18 | 박부경                    | 56거5441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14통 3반<br>202호                      | 100,000 |
| 1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20 | 김시영                    | 인천31로3<br>505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553번지 15호<br>1통 2반 101호             | 40,000  |

|    |           |               |                           |               |         |                                                         |         |
|----|-----------|---------------|---------------------------|---------------|---------|---------------------------------------------------------|---------|
| 1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26 | 유림특수화<br>물(주)             | 인천31라6<br>417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428번지 6호<br>남동공단 20-7                  | 290,000 |
| 2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28 | 김낙용                       | 11머5641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33번지 1호<br>48동 5반 논현휴먼시아<br>510동 502호 | 20,000  |
| 2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29 | 이형석                       | 59너3672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111번지 256호<br>13동 7반 대양빌라 31동<br>402호  | 190,000 |
| 2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32 | 이장원                       | 인천33구7<br>775 | 430-010 | 경기도 안양시만안구<br>안양동 708번지 48호<br>2통 6반                    | 50,000  |
| 2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33 | 이장원                       | 인천33구7<br>714 | 430-010 | 경기도 안양시만안구<br>안양동 708번지 48호<br>2통 6반                    | 50,000  |
| 2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1704 | NORMURA<br>TOV<br>SHAUKAT | 22거1131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622번지 1호<br>남동공단 12B-2L                | 200,000 |
| 2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35 | 김진옥                       | 54러6943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391번지 3호<br>18동 3반 풍림아파트<br>202동 1602호 | 20,000  |
| 2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38 | 권연선                       | 인천35머6<br>297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568번지 5호<br>13동 6반 신일빌라<br>403호        | 150,000 |
| 2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40 | 주식회사리<br>더스텔레콤            | 인천31도9<br>710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343번지<br>17호                           | 170,000 |
| 2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42 | 송세균                       | 73구5229       | 429-020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br>752번지 2호 12통 3반<br>101호                  | 20,000  |
| 2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44 | 대청산업(주)                   | 86보3321       | 405-27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운연동 258번지 4호                               | 50,000  |
| 3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46 | 윤인상                       | 인천31로3<br>809 | 217-070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br>289번지 1호 38통 2반                          | 20,000  |
| 3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47 | 유현숙                       | 80가3123       | 405-26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서창동 538번지 10통<br>3반 태평아파트 205동<br>1902호    | 20,000  |
| 3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1450 | 홍강표                       | 55러418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80번지 24호<br>5통 3반 이진다세대주택<br>4동 201호  | 20,000  |
| 3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52 | 김영원                       | 15두2248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61번지 18호<br>9통 4반                     | 20,000  |
| 3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54 | 안성애                       | 41주514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1번지 21호<br>2통 4반 원흥다세대주택<br>4동 202호  | 20,000  |
| 3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56 | 박상영                       | 40부745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9번지<br>364호 22통 1반<br>경인맨션 101동 302호 | 20,000  |

|    |           |               |              |               |         |                                                            |         |
|----|-----------|---------------|--------------|---------------|---------|------------------------------------------------------------|---------|
| 3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58 | 방상민          | 15도361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9번지 87호<br>11통 1반 202호                  | 20,000  |
| 3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1581 | 오용환          | 13고611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45번지 6통<br>4반 한국아파트 103동<br>1610호       | 70,000  |
| 3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64 | 천혜정          | 09무337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1번지 12호<br>2통 5반 101호                   | 130,000 |
| 3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65 | 조수연          | 25나9835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20번지 23통<br>2반 주공아파트 603동<br>404호         | 20,000  |
| 4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66 | 강성희          | 07주840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05번지 16통<br>1반 효성상아맨션 1동<br>1202호        | 20,000  |
| 4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67 | 김민주          | 31가574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21번지 17호<br>25통 3반<br>정우다세대주택 D동<br>101호 | 140,000 |
| 4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69 | 산돌지역아<br>동센터 | 73오2387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61번지 7호<br>2층                            | 20,000  |
| 4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71 | 김영일          | 46녀641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05번지<br>26통 6반 주공아파트<br>708동 1411호      | 20,000  |
| 4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72 | 유완중          | 25모545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1번지 16호<br>2통 6반 원흥다세대주택<br>1동 102호     | 210,000 |
| 4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74 | 덕천토건(주)      | 25가884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77번지<br>4호 4층                           | 20,000  |
| 4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75 | 허형자          | 05버797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95번지 44호<br>6통 5반 2층동                    | 20,000  |
| 4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76 | 손민성          | 인천34도3<br>640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95번지 2호<br>9통 1반 삼형다세대주택<br>가동 202호      | 20,000  |
| 4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78 | 강형근          | 인천34도3<br>30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42번지 5호<br>19통 2반 성원빌라 B동<br>101호        | 20,000  |
| 4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79 | 김관석          | 26구203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46번지 11통<br>6반 주공아파트 319동<br>403호         | 20,000  |
| 5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80 | 전봉률          | 인천32거4<br>37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46번지 10통<br>6반 주공아파트 310동<br>202호         | 130,000 |
| 5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81 | 강대성          | 인천32거3<br>058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9번지 6호<br>28통 1반 B01호                   | 170,000 |

|    |           |               |              |               |         |                                                          |         |
|----|-----------|---------------|--------------|---------------|---------|----------------------------------------------------------|---------|
| 5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82 | 이옥선          | 인천32거1<br>54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05번지<br>24통 2반 주공아파트<br>706동 509호     | 240,000 |
| 5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83 | 박찬일          | 인천33구4<br>940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29번지 3통<br>4반 주공아파트 203동<br>103호        | 240,000 |
| 5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87 | 김용찬          | 59너3903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43번지<br>23통 6반 주공아파트<br>1003동 1507호   | 120,000 |
| 5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88 | 최기봉          | 인천31루7<br>87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93번지<br>15호 8/1<br>미림다세대주택 4동<br>B01호  | 70,000  |
| 5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89 | 김수명          | 41주5107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2번지 21호<br>25통 6반 신한아파트<br>B동 319호      | 20,000  |
| 5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90 | 김광안          | 25다411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5번지 457호<br>22통 6반 현일빌라<br>106동 101호    | 240,000 |
| 5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93 | 김순희          | 37수1117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42번지 4통<br>3반 광명아파트 107동<br>902호      | 20,000  |
| 5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94 | 최남순          | 86러3115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86번지 15호<br>4통 2반                      | 20,000  |
| 6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095 | 최용식          | 인천33거7<br>97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60번지 3호<br>16통 5반                      | 150,000 |
| 6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00 | 주식회사<br>토우조경 | 인천30로3<br>14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11번지 5호<br>만선빌딩 402호                   | 250,000 |
| 6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01 | 박성준          | 인천31도3<br>073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73번지 17호<br>1통 4반 태건빌라 102호            | 50,000  |
| 6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02 | 김재준          | 인천30도9<br>710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86번지 1호<br>31통 4반 이삭아파트<br>104동 1902호 | 20,000  |
| 6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03 | 오병석          | 인천34라5<br>25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53번지 1호<br>28통 1반                       | 20,000  |
| 6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05 | 이종원          | 09누826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49번지 6호<br>6통 3반 401호                  | 90,000  |
| 6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06 | 한승재          | 인천30로2<br>620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48번지 8호<br>6통 2반 은하센스빌<br>B01호         | 260,000 |
| 6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07 | 김동훈          | 인천60가7<br>858 | 472-840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br>마석우리 474번지 31통<br>6반 경춘빌라 5동<br>103호     | 40,000  |

|    |           |               |                |               |         |                                                        |         |
|----|-----------|---------------|----------------|---------------|---------|--------------------------------------------------------|---------|
| 6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09 | 조인혁            | 인천30모5<br>928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02번지 13통<br>4반 삼용아파트 A동<br>606호      | 20,000  |
| 6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12 | 이동건            | 25가191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48번지 8호<br>6통 2반 은하센스빌<br>201호       | 20,000  |
| 7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1628 | 김재영            | 80조130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87번지 22호<br>5통 3반 이진다세대주택<br>B02호    | 20,000  |
| 7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15 | 이진형            | 01고3408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4번지 23호<br>3통 3반 동우아트빌 1동<br>B02호   | 170,000 |
| 7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16 | 김진기            | 36루6317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38번지 18호<br>4통 2반 세진빌라 B동<br>202호    | 110,000 |
| 7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19 | 디엔에스공<br>영(주)  | 37수1511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19번지 4호<br>한진상가 제지하층<br>제6호중 1호      | 20,000  |
| 7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20 | 조영수            | 33무388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7번지 320호<br>49통 4반 로얄그린빌라<br>3동 B02호 | 20,000  |
| 7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21 | 이정주            | 56부8383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19번지 4호<br>31통 6반 한진아파트<br>3동 1103호  | 20,000  |
| 7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23 | 황재성            | 77벼5999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42번지 7호<br>3통 3반                     | 280,000 |
| 7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24 | (주)인천스<br>피드렉카 | 06라637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00번지 6호                              | 290,000 |
| 7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25 | 고순택            | 06서6310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48번지 2호<br>21통 1반 B02호                | 220,000 |
| 7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26 | 김기룡            | 10루918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607번지 16호<br>23통 4반 성지그린빌<br>402호     | 250,000 |
| 8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27 | 김형배            | 01소9263       | 250-820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br>천현리 650번지 9호<br>2통 1반                   | 20,000  |
| 8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30 | 권정원            | 39누577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7번지 456호<br>49통 1반 삼진빌라 2동<br>103호   | 20,000  |
| 8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32 | 조재훈            | 86거128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54번지 3호<br>2통 4반 B01호                | 20,000  |

|    |           |               |                   |               |         |                                                         |         |
|----|-----------|---------------|-------------------|---------------|---------|---------------------------------------------------------|---------|
| 8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1898 | 태양렌트카<br>(주)      | 인천30허7<br>207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18번지<br>69호 선일빌딩4층                    | 160,000 |
| 8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36 | 전성기               | 22거1087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74번지 44호<br>17동 5반                    | 20,000  |
| 8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37 | 장윤진               | 인천32너1<br>50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456번지 10호<br>13동 3반 희망주택빌라<br>501호     | 150,000 |
| 8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39 | 강남숙               | 인천32거6<br>495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13번지 1호<br>1동 1반 석천상가 37호             | 70,000  |
| 8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41 | 김희철               | 인천32거4<br>67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3번지 9호<br>43동 5반 우성아튼빌<br>E동 B02호     | 120,000 |
| 8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43 | 지석주               | 인천32거3<br>199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25번지<br>299호 4동 1반<br>조인하이빌 E동 402호   | 170,000 |
| 8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44 | 박명옥               | 인천33구5<br>819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88번지 9호<br>32동 6반 지하동 2호               | 150,000 |
| 9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45 | 심재진               | 인천33구4<br>68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70번지 3호<br>22동 1반<br>청후샬레오피스텔<br>304호 | 250,000 |
| 9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47 | 노기대               | 인천32마6<br>450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46번지 10호<br>5동 2반 103호                | 70,000  |
| 9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49 | 방용자               | 인천32러4<br>90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51번지 10호<br>14동 1반                    | 20,000  |
| 9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50 | (주)<br>굿라이프       | 인천32다5<br>541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13번지 1호<br>303호                       | 30,000  |
| 9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51 | (주)<br>한신정보통<br>신 | 인천32거9<br>343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92번지 4호<br>원빌딩401호                    | 20,000  |
| 9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52 | 심성현               | 인천34머8<br>89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44번지 19호<br>4동 2반 미래모닝빌<br>501호       | 20,000  |
| 9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53 | 최추자               | 인천31무4<br>285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24번지 20호<br>3동 4반 103호                | 20,000  |
| 9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54 | 황주석               | 52머212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08번지 28호<br>20동 4반 가람오피스텔<br>202호     | 170,000 |
| 9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55 | 서승일               | 인천33노6<br>381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73번지 6호<br>17동 4반 성지팔레스텔<br>503호      | 40,000  |

|     |           |               |     |               |         |                                                                           |         |
|-----|-----------|---------------|-----|---------------|---------|---------------------------------------------------------------------------|---------|
| 9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56 | 신범수 | 인천31두7<br>88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7번지 562호<br>25동 1반 롯데빌라 2동<br>202호                      | 200,000 |
| 10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57 | 주수천 | 인천31누3<br>33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22번지 23호<br>2동 4반 두산빌라 나동<br>B02호                       | 70,000  |
| 10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58 | 강경덕 | 인천31구7<br>593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893번지 27동<br>5반 현대아파트 104동<br>106호                       | 20,000  |
| 10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59 | 임종복 | 73우2742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1번지 4호<br>43동 4반 102호                                   | 60,000  |
| 10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60 | 김윤중 | 52더1041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28번지 1호<br>6통 1반 두용빌라 7동<br>101호                        | 20,000  |
| 10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61 | 백옥현 | 인천32거9<br>663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90번지 25호<br>9통 5반                                       | 60,000  |
| 10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62 | 이정일 | 인천31도9<br>77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773번지 20호<br>41통 4반 중성골든빌라<br>2동 301호                    | 170,000 |
| 10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63 | 지연진 | 인천33머1<br>821 | 151-010 | 서울특별시 관악구<br>신림동 572번지 5호<br>9통 5반                                        | 250,000 |
| 10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65 | 최영준 | 인천32라8<br>151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616번지<br>738호 38통 2반 간석<br>신동아파밀리에<br>명품아파트 103동<br>803호 | 20,000  |
| 10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67 | 김진호 | 인천31노2<br>721 | 440-290 | 경기도 수원시장안구<br>파장동 370번지 16호<br>17통 1반                                     | 70,000  |
| 10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68 | 심영탁 | 인천31머8<br>597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617번지 76호<br>30통 5반 영화빌라 5동<br>301호                      | 20,000  |
| 11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69 | 이정호 | 70머233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94번지 3호<br>1통 2반                                        | 20,000  |
| 11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72 | 김정임 | 인천30도7<br>52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2번지 5호<br>29통 1반 신한아파트<br>1동 101호                       | 20,000  |
| 11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73 | 차애화 | 인천31마2<br>740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899번지 1호<br>24통 3반 동국아파트<br>1동 501호                      | 20,000  |

|     |           |               |     |               |         |                                                              |         |
|-----|-----------|---------------|-----|---------------|---------|--------------------------------------------------------------|---------|
| 11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74 | 조관중 | 09터1549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38번지 1호<br>12통 1반<br>어울림마을아파트 107동<br>601호 | 150,000 |
| 11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75 | 김일호 | 인천31머8<br>580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60번지 11호<br>7통 3반                          | 20,000  |
| 11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77 | 안익수 | 인천2머80<br>3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61번지 18호<br>38통 2반                          | 20,000  |
| 11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78 | 주기용 | 13고6834       | 402-080 |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br>484번지 9호 14통 5반<br>204호                      | 150,000 |
| 11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79 | 이병천 | 22터277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3번지 2통<br>2반 롯데캐슬골드<br>1110동 403호          | 20,000  |
| 11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80 | 강경모 | 80조7663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49번지 1호<br>11통 5반 201호                    | 20,000  |
| 11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82 | 주지환 | 27머8387       | 400-310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br>536번지 8호 12통 2반<br>인정맨션 202호                 | 20,000  |
| 12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83 | 정윤희 | 45다763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60번지<br>14호 5통 5반 이진빌라<br>다동 201호         | 20,000  |
| 12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84 | 방현태 | 08보9945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60번지 9호<br>5통 6반 원성빌라 나동<br>B02호          | 20,000  |
| 12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85 | 김재덕 | 34루143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88번지 5호<br>19통 5반                         | 110,000 |
| 12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86 | 박갑수 | 11가757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01번지 41호<br>22통 5반 2층동                    | 80,000  |
| 12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87 | 현철권 | 05도717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75번지 13호<br>23통 3반                        | 20,000  |
| 12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88 | 전미정 | 01조566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13번지 9호<br>4통 3반 아남빌라 2동<br>401호          | 80,000  |
| 12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89 | 이병선 | 01저296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06번지 9호<br>13통 5반 상신빌라<br>201호            | 170,000 |
| 12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94 | 김영훈 | 26조468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349번지 8호<br>6통 5반 석원빌라 1동<br>401호           | 90,000  |
| 12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95 | 박현숙 | 09터1193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097번지 10호<br>5통 2반 우성아트빌라<br>F동 101호       | 170,000 |

|     |           |               |               |               |         |                                                        |         |
|-----|-----------|---------------|---------------|---------------|---------|--------------------------------------------------------|---------|
| 12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96 | 강현희           | 45모310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31번지 12호<br>13통 4반 덕우하이츠<br>C동 402호 | 20,000  |
| 13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97 | 박중호           | 25나9431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76번지 10호<br>23통 5반                  | 170,000 |
| 13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98 | 김현호           | 86러709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99번지 10호<br>21통 2반 송원빌라 2동<br>301호  | 20,000  |
| 13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02 | SUN<br>TAIZHE | 38거335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349번지<br>615호 대하빌라201호                | 20,000  |
| 13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03 | 민경운           | 52보136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59번지 3호<br>17통 5반 201호              | 60,000  |
| 13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04 | 김미라           | 07여9875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58번지 5호<br>30통 1반 청양빌라<br>B02호      | 20,000  |
| 13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05 | 김경순           | 인천34도4<br>06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82번지<br>20호 16통 4반<br>신비아트빌 302호    | 20,000  |
| 13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06 | 최영남           | 인천32거9<br>37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11번지 34호<br>8통 5반 연수주택 B동<br>301호   | 20,000  |
| 13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08 | 서정환           | 인천32거8<br>773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11번지 5호<br>3통 3반 보광오피스텔<br>302호     | 20,000  |
| 13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09 | 김재덕           | 58주557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88번지 5호<br>19통 5반                   | 170,000 |
| 13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10 | 김강진           | 인천32거8<br>919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79번지<br>22호 17통 5반 102호             | 20,000  |
| 14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11 | 최기성           | 인천34도3<br>31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50번지 11호<br>37통 1반 삼우빌라 A동<br>202호  | 20,000  |
| 14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12 | 인도정           | 인천35머7<br>11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4번지 14통<br>3반 롯데캐슬골드<br>2208동 606호   | 80,000  |
| 14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14 | 김범기           | 26너1865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462번지 2호<br>32통 7반<br>새롬노빌리안1차 115호  | 150,000 |
| 14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15 | 채순표           | 인천32거3<br>42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10번지 6호<br>25통 5반 103호              | 150,000 |
| 14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17 | 최광수           | 인천35머5<br>879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39번지 4호<br>35통 1반 가람오피스텔<br>703호    | 220,000 |

|     |           |               |                 |               |         |                                                             |         |
|-----|-----------|---------------|-----------------|---------------|---------|-------------------------------------------------------------|---------|
| 14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18 | 이동의             | 인천32거1<br>257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32번지 19호<br>35통 4반<br>신한데뷰오피스텔<br>408호   | 250,000 |
| 14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19 | 박성결             | 인천70거9<br>509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49번지 1호<br>11통 5반 101호                   | 210,000 |
| 14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21 | (주)덕인건<br>설     | 09조2433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61번지 1호<br>신우빌딩 302호                     | 160,000 |
| 14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23 | 박호              | 인천32가8<br>43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37번지 5호<br>12/4 양지빌라 202호                | 20,000  |
| 14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25 | 김경수             | 52거6529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01번지 38호<br>22통 5반 지충동                   | 20,000  |
| 15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26 | 최장학             | 인천34터1<br>789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3번지 10통<br>3반 구월힐스테이트<br>1509동 805호       | 20,000  |
| 15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27 | 주식회사태<br>산실업    | 인천31로2<br>95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95번지<br>12호                              | 60,000  |
| 15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29 | 황미혜             | 인천34너6<br>76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01번지 76호<br>25통 3반 한신타운<br>102호           | 60,000  |
| 15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30 | 양재호             | 06오2635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456번지<br>27통 1반 이토타워<br>꼬르뎀레오피스텔<br>1205호 | 20,000  |
| 15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32 | 김재국             | 인천33머5<br>67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4번지 11통<br>5반 롯데캐슬골드<br>2105동 703호        | 20,000  |
| 15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33 | 하이테크중<br>합건설(주) | 인천72나4<br>61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33번지                                     | 270,000 |
| 15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35 | 이미숙             | 인천31머5<br>42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79번지 155호<br>1통 5반                        | 170,000 |
| 15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36 | 이창근             | 인천31머2<br>47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43번지 12호<br>26통 4반                       | 20,000  |
| 15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37 | 남승구             | 52도7727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70번지 30호<br>22통 5반                         | 20,000  |
| 15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38 | 한규천             | 인천83나1<br>35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13번지 44호<br>4통 3반 아람빌라 2동<br>404호        | 20,000  |
| 16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40 | 이은숙             | 인천30모8<br>36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29번지 17호<br>36통 5반<br>새롬노빌리안2차 411호      | 40,000  |

|     |           |               |                       |               |         |                                                                   |         |
|-----|-----------|---------------|-----------------------|---------------|---------|-------------------------------------------------------------------|---------|
| 16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42 | (주)우림중<br>합건축사사<br>무소 | 인천30고6<br>595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46번지 6호<br>에스파스 402호                           | 210,000 |
| 16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43 | 장진원                   | 인천30모6<br>557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23번지 1호<br>10통 5반 가야빌라<br>B01호                 | 20,000  |
| 16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44 | (주)아이리츠               | 인천31라1<br>57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br>1126번지 3호 3층                                     | 20,000  |
| 16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45 | 김경훈                   | 인천31마2<br>70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05번지 2호<br>13통 1반 삼원빌라 다동<br>B02호              | 150,000 |
| 16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46 | 김재덕                   | 86며108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88번지 5호<br>19통 5반                              | 190,000 |
| 16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47 | 염창훈                   | 47더534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70번지 2호<br>33통 2반 대영주택<br>405호                 | 260,000 |
| 16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48 | 민경윤                   | 28며398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59번지 3호<br>17통 5반 201호                         | 20,000  |
| 16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49 | 안효준                   | 13고6373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81번지 12호<br>19통 1반 101호                        | 20,000  |
| 16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50 | 이범호                   | 인천30도7<br>183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89번지 4호<br>29통 4반 2층동                          | 80,000  |
| 17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51 | 정순영                   | 인천30모6<br>56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62번지 12호<br>4통 3반 경복빌라 다동<br>201호              | 20,000  |
| 17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52 | 강봉선                   | 인천32너2<br>79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88번지 2호<br>29통 4반 경창빌라<br>302호                 | 20,000  |
| 17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54 | 문진갑                   | 34겨8885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7번지 47호<br>23통 7반 303호                           | 50,000  |
| 17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55 | 김대현                   | 27며9811       | 402-060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br>533번지 14호 23통<br>1반 영호주택 1동 101호                  | 280,000 |
| 17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56 | 한원희                   | 16우8160       | 400-340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br>2787번지 1호 38통<br>6반<br>금호베스트빌1단지아파<br>트 102동 505호 | 290,000 |
| 17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58 | 윤기원                   | 인천81다7<br>66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29번지 2통<br>6반 주공아파트 118동<br>501호                 | 300,000 |
| 17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59 | 최기선                   | 04오1691       | 404-250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br>114번지 75호 27통<br>5반 창대빌라 제가동<br>202호              | 20,000  |

|     |           |               |     |               |         |                                                               |         |
|-----|-----------|---------------|-----|---------------|---------|---------------------------------------------------------------|---------|
| 17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60 | 지재희 | 인천30모4<br>862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19번지 4호<br>30통 1반 한진아파트<br>4동 406호          | 20,000  |
| 17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61 | 이성애 | 인천30루1<br>281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25번지<br>317호 6통 1반<br>양지쉐르빌 402호            | 20,000  |
| 17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62 | 김현식 | 인천30터3<br>981 | 336-810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br>방현리 514번지 5호<br>2통 창우아파트 415호                 | 160,000 |
| 18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64 | 나순희 | 인천34다8<br>629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42번지 3호<br>3통 3반 202호                       | 50,000  |
| 18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65 | 이윤미 | 인천30머7<br>983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82번지 10호<br>8통 3반 삼익목화빌라<br>301호            | 150,000 |
| 18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66 | 정현진 | 28머307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13번지 3호<br>1통 4반 형진프라자<br>403호              | 20,000  |
| 18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67 | 박홍민 | 인천2너6227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617번지 15호<br>28통 5반 화성빌라 B동<br>202호          | 260,000 |
| 18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69 | 황진택 | 인천30거6<br>352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38번지 1호<br>12통 1반<br>어울림마을아파트 107동<br>2402호 | 200,000 |
| 18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70 | 김근수 | 10로836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08번지 79호<br>19통 2반 문송상가주택<br>203호           | 240,000 |
| 18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71 | 서무웅 | 26조1695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42번지 11호<br>3통 3반 303호                      | 70,000  |
| 18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72 | 김윤중 | 05저4679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28번지 1호<br>6통 1반 두용빌라 7동<br>101호            | 220,000 |
| 18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74 | 김지희 | 41소9965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13번지 3호<br>1통 4반 형진아파트<br>410호              | 50,000  |
| 18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75 | 김재덕 | 86거266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88번지 5호<br>19통 5반                          | 70,000  |
| 19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76 | 김재덕 | 58주576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88번지 5호<br>19통 5반                          | 250,000 |
| 19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77 | 김정옥 | 56고1957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13번지 2호<br>28통 2반 벽산아파트<br>2동 107호         | 20,000  |
| 19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78 | 허은선 | 25다1294       | 402-070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br>404번지 9호 24통 2반<br>103호                       | 270,000 |

|     |           |               |                                 |               |         |                                                                |         |
|-----|-----------|---------------|---------------------------------|---------------|---------|----------------------------------------------------------------|---------|
| 19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80 | 진희태                             | 27러8398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84번지 10호<br>3통 2반 하이테크빌리지<br>102호            | 260,000 |
| 19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81 | 이인택                             | 86노202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77번지 1호<br>2통 6반 삼미다세대주택<br>7동 102호          | 20,000  |
| 19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82 | 박선화                             | 86보3233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42번지 3통<br>5반 광명아파트 105동<br>412호            | 100,000 |
| 19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83 | 전충구                             | 86서629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43번지 30호<br>17통 1반 2층동                       | 160,000 |
| 19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90 | 김성용                             | 인천32러8<br>70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2번지 11호<br>2통 2반 태광다세대주택<br>가동 B01호         | 80,000  |
| 19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91 | 정광영                             | 인천32더2<br>96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2번지 10호<br>2통 1반<br>신탄양다세대주택 6동<br>301호     | 20,000  |
| 19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92 | (주)한아건설                         | 25모4918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80번지 6호                                      | 20,000  |
| 20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95 | ROZAMETOV<br>VAKHITZHAN         | 42보8981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674번지 6호                                      | 20,000  |
| 20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98 | 김복석                             | 04마4532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306번지 6호<br>18통 1반 106호                       | 240,000 |
| 20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299 | ROZAMET<br>OV<br>VAKHITZH<br>AN | 55나2162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674번지 6호                                      | 20,000  |
| 20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01 | 서보관                             | 65조6118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15통 6반<br>201호                                | 20,000  |
| 20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02 | 황은영                             | 38나1903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15통 1반<br>205호                                | 70,000  |
| 20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05 | (주)씨에이텍                         | 86보6734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435번지 5호<br>남동공단 45블럭 7롯데                     | 20,000  |
| 20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06 | 김영란                             | 26녀5929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43번지 1호<br>61통 6반 논현휴먼시아<br>범마을 212동 504호    | 120,000 |
| 20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07 | 양원훈                             | 73보1273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04번지 1호<br>53통 4반<br>넷마을신영지웰아파트<br>909동 802호 | 20,000  |
| 20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08 | (주)하이테크전자                       | 인천32머4<br>729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429번지 9호                                      | 20,000  |

|     |           |               |                 |               |         |                                                             |         |
|-----|-----------|---------------|-----------------|---------------|---------|-------------------------------------------------------------|---------|
| 20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11 | (주)헌트엔<br>지니어링  | 인천33구8<br>734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433번지 8호<br>남동공단1단지 22블럭<br>14롯데           | 20,000  |
| 21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16 | 강재구             | 27무2945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43번지 1호<br>61통 2반 논현휴먼시아<br>범마을 208동 804호 | 20,000  |
| 21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17 | 김경필             | 인천30도9<br>266 | 402-20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br>917번지 38호 11통 5반                            | 300,000 |
| 21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18 | (유한)대송<br>부동산정보 | 15도3583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74번지 7호<br>명진탑스빌 A-201                    | 300,000 |
| 21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19 | 박경희             | 인천35미5<br>14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99번지<br>20호 21통 4반<br>청솔빌라 나동 201호       | 300,000 |
| 21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21 | 김재덕             | 56루884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88번지 5호<br>19통 5반                        | 300,000 |
| 21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22 | (주)명성개발         | 인천80거1<br>993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453번지<br>12호 남동공단 23B2L                    | 300,000 |
| 21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23 | 신정현             | 25다7241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95번지 9호<br>32통 2반 신명쉐르빌<br>가동 302호       | 300,000 |
| 21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25 | 장지수             | 07오794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53번지 1호<br>35통 4반                         | 300,000 |
| 21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26 | 최명숙             | 07모778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38번지 7호<br>4통 5반 호진빌라 1동<br>301호          | 300,000 |
| 21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28 | 민주환             | 29거2727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45번지 5호<br>5통 1반 성도빌라 101호                | 300,000 |
| 22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30 | 고남선             | 27누962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404번지<br>14호 25통 2반 201호                  | 300,000 |
| 22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32 | 강옥란             | 26너3477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05번지 14통<br>1반 효성상아맨션 5동<br>302호          | 300,000 |
| 22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33 | 박영자             | 10우704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59번지 3호<br>5통 4반 1층동                     | 300,000 |
| 22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34 | 준건설(주)          | 26구399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46번지 6호<br>에스파스403-2                     | 300,000 |
| 22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35 | 정재균             | 48나341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73번지 7호<br>30통 4반 402호                   | 300,000 |
| 22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37 | 이석순             | 인천73나5<br>085 | 134-030 | 서울특별시 강동구<br>성내동 516번지 12호<br>34통 9반 3층동 301호               | 300,000 |

|     |           |               |                 |               |         |                                                             |         |
|-----|-----------|---------------|-----------------|---------------|---------|-------------------------------------------------------------|---------|
| 22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39 | 정화자             | 인천32마7<br>57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79번지 7호<br>17통 1반 304호                   | 300,000 |
| 22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40 | 박관재             | 31저1606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564번지 1호<br>21통 3반<br>논현주공아파트 105동<br>901호 | 300,000 |
| 22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42 | 김창래             | 인천31도5<br>797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577번지 30통<br>1반 소래마을풍림아파트<br>106동 1903호    | 300,000 |
| 22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43 | 최혁규             | 80오850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616번지 111호<br>31통 5반 용창이지홈<br>102동 402호    | 300,000 |
| 23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44 | 안상민             | 10우8213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96번지 17호<br>19통 1반 광명빌라 나동<br>101호       | 300,000 |
| 23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46 | 지규찬             | 86노1607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76번지 43호<br>35통 5반                         | 300,000 |
| 23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47 | 이진우             | 인천34노7<br>956 | 138-170 | 서울특별시 송파구<br>송파동 111번지 44호<br>23통 4반 B03호                   | 300,000 |
| 23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48 | 조선영             | 05보784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7번지 224호<br>18통 3반 우진빌라<br>3차동 102호       | 300,000 |
| 23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49 | 정희근             | 인천31구8<br>652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7번지 251호<br>23통 4반<br>새빛하이츠빌라 5동<br>402호  | 300,000 |
| 23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51 | (주)에이스<br>정보통신  | 52노328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31번지<br>10호                              | 300,000 |
| 23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53 | (주)삼정건<br>축사사무소 | 34소7549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29번지<br>19호 이노프라자텔<br>201호               | 300,000 |
| 23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54 | (주)아이리<br>즈     | 06더3989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613번지 4호<br>남동공단 33블럭 5롯데                  | 300,000 |
| 23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56 | 서인경             | 인천34노7<br>812 | 136-140 | 서울특별시 성북구<br>장위동 6번지 71호<br>2통 9반                           | 300,000 |
| 23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58 | 김동량             | 26조6718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81번지 3호<br>19통 4반                         | 300,000 |
| 24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59 | 이정숙             | 26구991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79번지 10호<br>17통 2반 다가구주택<br>104호         | 300,000 |
| 24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60 | (주)설립           | 인천3로16<br>87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31번지<br>10호                              | 300,000 |

|     |           |               |              |               |         |                                                          |         |
|-----|-----------|---------------|--------------|---------------|---------|----------------------------------------------------------|---------|
| 24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62 | 이규희          | 86라672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9번지 66호<br>13통 4반 만수마을 3동<br>101호     | 300,000 |
| 24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63 | 황창영          | 인천33구2<br>541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11번지 328호<br>3통 1반 대산빌라 1동<br>302호     | 300,000 |
| 24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134 | 태양렌트카<br>(주) | 인천30허6<br>74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18번지<br>69호 선일빌딩4층                     | 300,000 |
| 24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64 | 태양렌트카<br>(주) | 인천30허7<br>250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18번지<br>69호 선일빌딩4층                     | 300,000 |
| 24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66 | 김경희          | 08고987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32번지 19호<br>35통 4반 신한데뷰<br>903호       | 300,000 |
| 24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67 | 함화남          | 인천30도3<br>08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349번지<br>504호 10통 2반<br>웅진빌라 B01호       | 300,000 |
| 24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68 | 김재덕          | 10오227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88번지 5호<br>19통 5반                     | 300,000 |
| 24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69 | TEN<br>DENIS | 07수9729       | 122-080 | 서울특별시 은평구<br>신사동 339번지 2호                                | 300,000 |
| 25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70 | 김민주          | 인천32마5<br>731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577번지 33통<br>5반 소래마을풍림아파트<br>118동 1705호 | 300,000 |
| 25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71 | 박애선          | 27루739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4번지 22호<br>3통 3반 동우아트빌<br>2동 401호     | 300,000 |
| 25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72 | 원은희          | 인천32마5<br>781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31번지 4호<br>3통 2반                       | 300,000 |
| 25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75 | 박성희          | 인천70거2<br>82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17번지 7호<br>9통 5반                      | 300,000 |
| 25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76 | (주)사진명<br>가  | 인천32가8<br>953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77번지<br>호성빌딩301호                      | 300,000 |
| 25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77 | 김춘희          | 인천34노7<br>323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20번지 6호<br>1통 1반 성일빌라트<br>403호         | 300,000 |
| 25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78 | 조정애          | 10모635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88번지 25호<br>14통 3반 동남빌라 13동<br>201호    | 300,000 |
| 25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79 | 윤용배          | 21너782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6번지 40호<br>29통 5반 송원빌라<br>15동 302호      | 300,000 |
| 25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80 | 함희민          | 26너911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09번지 9호<br>6통 5반                      | 300,000 |

|     |           |               |             |               |         |                                                             |         |
|-----|-----------|---------------|-------------|---------------|---------|-------------------------------------------------------------|---------|
| 25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82 | 고종철         | 25보673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11번지 152호<br>6통 2반 남부그린빌라<br>202호         | 300,000 |
| 26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83 | 김현          | 인천34노7<br>114 | 413-020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br>331번지 4호 2통 4반                               | 300,000 |
| 26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85 | 최영자         | 인천33구1<br>824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43번지 1호<br>61통 6반 논현휴먼시아<br>범마을 212동 508호 | 300,000 |
| 26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86 | 신용균         | 34다9079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304번지 7호<br>15통 8반 남촌빌라 A동<br>502호         | 300,000 |
| 26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87 | 고순란         | 인천32바1<br>140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05번지<br>27통 2반 주공아파트<br>709동 220호        | 300,000 |
| 26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88 | 오택선         | 인천35머3<br>89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8번지 24호<br>28통 6반<br>현대다세대주택 가동<br>B01호  | 300,000 |
| 26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89 | 이재천         | 인천31노6<br>787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86번지 7호<br>30통 2반 102호                    | 300,000 |
| 26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91 | 김영임         | 인천32마4<br>67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13번지 20호<br>42통 2반                        | 300,000 |
| 26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92 | 김기태         | 인천31라1<br>277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762번지 55호<br>29통 2반 목화빌라 6동<br>101호        | 300,000 |
| 26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93 | 김광배         | 인천31누5<br>70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91번지 13호<br>30통 2반 102호                  | 300,000 |
| 26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96 | 손근하         | 인천31라8<br>56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37번지 7호<br>12통 4반 202호                   | 20,000  |
| 27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98 | 김재수         | 인천70다5<br>75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3번지 1통<br>6반 구월힐스테이트<br>1106동 1503호       | 20,000  |
| 27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399 | 스타전자(<br>주) | 인천34너8<br>702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622번지 5<br>호                               | 20,000  |
| 27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03 | 김형진         | 52무245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28번지 5호<br>27통 2반 202호                   | 20,000  |
| 27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05 | 정동진         | 15두275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4번지 15통<br>4반 롯데캐슬골드<br>2303동 202호        | 20,000  |
| 27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06 | 이경모         | 52소289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60번지 5호<br>16통 4반 동아아파트<br>2동 901호        | 20,000  |

|     |           |               |     |               |         |                                                              |        |
|-----|-----------|---------------|-----|---------------|---------|--------------------------------------------------------------|--------|
| 27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07 | 김태경 | 09누9444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43번지 1호<br>60동 6반 논현휴먼시아<br>범마을 205동 1503호 | 20,000 |
| 27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09 | 방형복 | 인천32거9<br>349 | 405-26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서창동 545번지 19동<br>2반<br>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br>306동 506호  | 20,000 |
| 27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10 | 장영식 | 인천32거9<br>39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05번지 16동<br>3반 효성상아맨션 2동<br>803호           | 20,000 |
| 27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11 | 고은석 | 47터504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00번지 73호<br>25동 3반                         | 20,000 |
| 27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13 | 김민순 | 40부7930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391번지 3호<br>18동 5반 풍림아파트<br>203동 2005호      | 20,000 |
| 28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14 | 이성자 | 18거286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12번지 5호<br>5동 2반 무궁화빌라<br>11동 302호        | 20,000 |
| 28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15 | 김기찬 | 31머580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17번지 3호<br>9동 5반 광해아트빌<br>301호            | 20,000 |
| 28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17 | 문영숙 | 28머846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02번지<br>54호 23동 5반<br>성화빌라 2동 301호        | 20,000 |
| 28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18 | 강경순 | 29로973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97번지<br>20동 1반 신동아빌라<br>301호              | 20,000 |
| 28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19 | 정창근 | 인천31마3<br>04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3번지 112호<br>29동 5반 101호                     | 20,000 |
| 28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21 | 김철민 | 인천34터2<br>35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41번지 13호<br>20동 7반                         | 20,000 |
| 28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22 | 김정래 | 인천34터2<br>054 | 405-25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장수동 806번지 3호<br>21동 4반 주공아파트<br>105동 1204호      | 20,000 |
| 28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25 | 안병양 | 인천35거4<br>863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42번지 4동<br>2반 광명아파트 106동<br>906호          | 20,000 |
| 28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26 | 김병기 | 52머6571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11번지 108호<br>5동 1반 화평빌라 103호               | 20,000 |
| 28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30 | 김왕배 | 09구272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29번지 7동<br>3반 주공아파트 211동<br>708호            | 20,000 |

|     |           |               |              |               |         |                                                                |        |
|-----|-----------|---------------|--------------|---------------|---------|----------------------------------------------------------------|--------|
| 29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32 | 김안자          | 인천30나9<br>691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59번지 3호<br>29통 3반                             | 20,000 |
| 29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33 | 강미순          | 인천31로6<br>400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617번지 24호<br>39통 4반<br>신원아침도시아파트<br>203동 302호 | 20,000 |
| 29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36 | 이경창          | 30다276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11번지 443호<br>8통 2반 수정빌라<br>201호              | 20,000 |
| 29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37 | 김한중          | 30다2398       | 405-26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서창동 572번지 13호<br>1통 2반 프라임빌 B동<br>301호            | 30,000 |
| 29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40 | 오나경          | 12나235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3번지 8통<br>4반 구월힐스테이트<br>1503동 1101호          | 20,000 |
| 29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41 | 강재현          | 26더5609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87번지 15통<br>3반 동남아파트 2동<br>606호              | 20,000 |
| 29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42 | 박준영          | 45보219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3번지 3통<br>5반 구월힐스테이트<br>1204동 201호           | 20,000 |
| 29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47 | 박종만          | 04보6089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38번지 1호<br>13통 7반<br>어울림마을아파트 112동<br>2503호  | 70,000 |
| 29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52 | 최영준          | 인천35머8<br>21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11번지 34호<br>22통 4반 태양점보빌라<br>402호            | 20,000 |
| 29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54 | 유진영          | 39누544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98번지 6호<br>20통 4반 서울아파트<br>507호             | 20,000 |
| 30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58 | (주)이지콜<br>렉션 | 86노211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75번지 2층                                      | 20,000 |
| 30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59 | 전주상          | 86라4947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7번지 224호<br>18통 3반 우진빌라<br>3차동 101호          | 20,000 |
| 30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60 | 노영환          | 인천30로8<br>595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5번지 318호<br>19통 7반 아주아파트<br>마동 615호           | 70,000 |
| 30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62 | 서진실          | 50러5384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577번지 29통<br>4반 소래마을풍림아파트<br>104동 803호        | 20,000 |

|     |           |               |              |               |         |                                                               |         |
|-----|-----------|---------------|--------------|---------------|---------|---------------------------------------------------------------|---------|
| 30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66 | 정연승          | 06로6837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42번지 9호<br>18통 5반<br>금호다세대주택 203호           | 20,000  |
| 30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70 | 이옥화          | 94구714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98번지<br>28통 4반 솔로타운<br>B06호                | 170,000 |
| 30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73 | 김병중          | 86주1369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3번지 2통<br>8반 롯데캐슬골드<br>1116동 2203호          | 20,000  |
| 30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74 | 권영수          | 인천31루2<br>879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774번지 7호<br>41통 1반 현대로얄빌라<br>라동 B01호         | 20,000  |
| 30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75 | 조속희          | 인천31다2<br>36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8번지 20호<br>28통 7반<br>우성다세대주택 2동<br>102호    | 20,000  |
| 30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83 | 최귀현          | 52루5229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3번지 7통<br>5반 구월힐스테이트<br>1404동 601호          | 20,000  |
| 31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84 | 강경란          | 인천31마1<br>02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27번지 9호<br>11통 1반 삼성빌라<br>101호             | 20,000  |
| 31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85 | 양승민          | 25조902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5번지 457호<br>22통 6반 현일맨션타운<br>106동 202호       | 50,000  |
| 31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87 | 신정희          | 인천34고7<br>507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38번지 1호<br>13통 5반<br>어울림마을아파트 111동<br>2504호 | 20,000  |
| 31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90 | 김창식          | 인천31라6<br>437 | 402-20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br>559번지 1호 16통 2반                               | 20,000  |
| 31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95 | 김달현          | 인천31로2<br>026 | 402-20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br>1617번지 18통 4반<br>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br>104동 1103호     | 190,000 |
| 31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97 | 이만희          | 07어151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82번지 43호<br>1통 6반                           | 20,000  |
| 31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98 | (주)마앤마<br>건설 | 05버129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56번지 1<br>호 재향군인회관 202호                    | 20,000  |
| 31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499 | 홍경순          | 인천34고2<br>910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7번지 8호<br>4통 6반                            | 20,000  |
| 31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01 | 이장일          | 39도8320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770번지 1호<br>27통 6반                           | 20,000  |

|     |           |               |     |               |         |                                                                |         |
|-----|-----------|---------------|-----|---------------|---------|----------------------------------------------------------------|---------|
| 31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02 | 전용명 | 인천31누1<br>46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70번지 2호<br>16통 4반<br>대신다세대주택 B01호            | 20,000  |
| 32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03 | 양원훈 | 인천31마2<br>618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04번지 1호<br>53통 4반<br>넷마을신영지웰아파트<br>909동 802호 | 20,000  |
| 32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04 | 오월성 | 26조791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90번지 40호<br>12통 4반                           | 20,000  |
| 32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06 | 강재웅 | 22거125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06번지 3호<br>6통 1반                            | 20,000  |
| 32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12 | 신세명 | 08나3017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3번지 5통<br>4반 구월힐스테이트<br>1304동 502호           | 20,000  |
| 32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16 | 이현주 | 26구9207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0번지 2호<br>1통 6반 홍일다세대주택<br>2층동 202호         | 20,000  |
| 32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17 | 정관홍 | 인천35려2<br>043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01번지 14호<br>7통 6반 현대하이츠빌라<br>2동 301호        | 20,000  |
| 32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18 | 김동윤 | 89가1527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19번지 9호<br>32통 5반 경아빌라 B동<br>302호            | 20,000  |
| 32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20 | 제해표 | 인천33노1<br>303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38번지 1호<br>10통 2반<br>어울림마을아파트 101동<br>904호   | 20,000  |
| 32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22 | 박주연 | 인천32나6<br>593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092번지 1호<br>4통 1반                            | 20,000  |
| 32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26 | 홍석범 | 인천32려7<br>959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47번지 16호<br>11통 2반                          | 20,000  |
| 33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28 | 나봉수 | 38가4257       | 404-240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br>281번지 1호 3통 4반                                 | 20,000  |
| 33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30 | 소동식 | 인천31두3<br>67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617번지 22호<br>39통 2반<br>신원아침도시아파텔<br>102동 801호 | 20,000  |
| 33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32 | 천병호 | 37두9653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097번지 11호<br>5통 2반 우성빌라 C동<br>102호           | 130,000 |
| 33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33 | 전창재 | 07고644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71번지 13호<br>16통 3반<br>정일다세대주택 D동<br>402호     | 20,000  |

|     |           |               |               |               |         |                                                                          |        |
|-----|-----------|---------------|---------------|---------------|---------|--------------------------------------------------------------------------|--------|
| 33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35 | 김은진           | 75루2010       | 405-26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서창동 545번지 19통<br>2반<br>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br>306동 1005호             | 20,000 |
| 33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40 | 서충일           | 46머6815       | 402-20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br>395번지 32호 2통 1반<br>대송오피스텔 301호                           | 20,000 |
| 33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42 | 이정화           | 52머6545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095번지 11호<br>4통 4반                                     | 20,000 |
| 33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45 | 조중선           | 인천32가7<br>737 | 405-26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서창동 540번지 23통<br>3반 서해그랑블아파트<br>103동 506호                   | 20,000 |
| 33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46 | 방제득           | 인천31마3<br>17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616번지 7호<br>38통 5반 간석<br>신동아파밀리에<br>명품아파트 104동<br>1006호 | 20,000 |
| 33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48 | 지광수           | 인천32거7<br>37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495번지 5호<br>28통 4반 금호아파트<br>5동 1106호                    | 20,000 |
| 34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50 | (주)세화래<br>스텝  | 86라1260       | 404-250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br>525번지 1 호                                                | 20,000 |
| 34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51 | 박미자           | 92가8346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15통 5반<br>202호                                          | 20,000 |
| 34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53 | 황선문           | 06나4000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617번지 22호<br>39통 3반<br>신원아침도시아파텔<br>102동 308호           | 20,000 |
| 34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54 | 권국            | 17러6421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22번지 13호<br>2통 4반                                      | 20,000 |
| 34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55 | 백승로           | 인천35거3<br>21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11번지 29호<br>8통 5반 연수주택 A동<br>302호                     | 20,000 |
| 34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56 | 박승철           | 인천32더1<br>53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3번지 15통<br>6반 주공아파트 410동<br>1508호                      | 20,000 |
| 34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59 | 정성원           | 인천32거4<br>030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76번지 1호<br>1통 1반 영종아파트<br>가동 406호                      | 20,000 |
| 34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60 | 김태화           | 52노3596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257번지 4호<br>13통 3반 광우빌라 2동<br>201호                      | 20,000 |
| 34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62 | 남경기술공<br>사(주) | 45다640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02번지 9<br>호 301호                                       | 20,000 |

|     |           |               |              |               |         |                                                         |         |
|-----|-----------|---------------|--------------|---------------|---------|---------------------------------------------------------|---------|
| 349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64 | 김순옥          | 80가304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49번지 5호<br>5통 4반 간석오피앙<br>B동 1001호    | 20,000  |
| 350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66 | 이미숙          | 인천31다7<br>01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37번지 19통<br>6반 현대아파트 105동<br>805호    | 140,000 |
| 351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67 | 박귀남          | 56부8373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346번지 2호<br>10통 6반                     | 200,000 |
| 352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69 | 주식회사<br>디에프씨 | 75버3528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712번지 21<br>호 148블럭 21롯데               | 210,000 |
| 353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70 | 원만희          | 02오3208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349번지 4호<br>11통 5반 삼화빌라 D동<br>301호     | 20,000  |
| 354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72 | 김숙영          | 49라223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02번지<br>26호 23통 2반 3층호               | 150,000 |
| 355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76 | 김남희          | 08겨4910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61번지 10호<br>9통 1반 201호                | 20,000  |
| 356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78 | 서주원          | 50저9427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5번지 322호<br>18통 7반 아주아파트<br>사동 406호    | 20,000  |
| 357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81 | 정승원          | 01가2352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577번지 30통<br>4반 소래마을풍림아파트<br>107동 203호 | 20,000  |
| 358 | 우체국<br>보관 | 1444202492582 | 구중옥          | 25가7261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53번지 9호<br>36통 1반 남인빌라<br>202호       | 230,000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162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08. 0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08. 01 ~ 2009. 08. 14
2. 의견제출기간 : 2009. 08. 14일까지.
3. 송달내역 : 사선헤 (인천80너9309) 등 90건(별첨 명단 참조)
4. 기타 :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과(☎ 032-453-2655)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부과 대상자 세부내역

| 순번 | 부과번호   | 등기번호          | 납부자성명        | 물건명       | 우편번호    | 주 소                                                      | 부과금액    |
|----|--------|---------------|--------------|-----------|---------|----------------------------------------------------------|---------|
| 1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585 | 사선헤          | 인천80너9309 | 413-010 | 경기도 파주시<br>금촌동 802번지<br>4호 3통 14반<br>교성다세대2차<br>102호     | 600,000 |
| 2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586 | (주)<br>엔엘티에스 | 05모699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91번지<br>7호 4층                         | 600,000 |
| 3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590 | (주)영일토<br>건  | 인천33구1414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34번지<br>1호 남문빌딩<br>301호               | 600,000 |
| 4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591 | 최승국          | 인천33구1113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22번지<br>17호 1통 4반                      | 600,000 |
| 5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592 | 신미연          | 80노874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342번지<br>1호 34통 7반<br>신세계아파트 5동<br>501호 | 600,000 |
| 6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593 | 창일건설(<br>주)  | 80더2761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02번지<br>6호                            | 600,000 |
| 7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594 | 임현오          | 인천80너9607 | 420-010 | 경기도<br>부천시월미구<br>심곡동 374번지<br>16호 10통 4반 2층              | 600,000 |
| 8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595 | 강태형(상<br>품용) | 28루3692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616번지<br>85호<br>천우모터스매상<br>사            | 600,000 |
| 9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598 | 이명원          | 인천7고2797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68번지<br>3호 13통 1반                     | 600,000 |
| 10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599 | 김종식          | 인천80려986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11번지<br>33호 8통 4반<br>삼화빌라 C동<br>401호  | 600,000 |
| 11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01 | 전중웅          | 인천73다3798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294번지<br>7호 1통 5반<br>성광탑스빌라 2동<br>302호  | 600,000 |
| 12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02 | 김덕만          | 인천86바9263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05번지<br>22통 1반<br>주공아파트 701동<br>601호  | 600,000 |
| 13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03 | 유희조          | 인천32마3235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60번지<br>24호 7통 3반<br>B02호              | 600,000 |

|    |        |               |               |           |         |                                                                   |         |
|----|--------|---------------|---------------|-----------|---------|-------------------------------------------------------------------|---------|
| 14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04 | 김정섭           | 인천35머315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06번지<br>8호 13통 5반<br>세일빌라 C동<br>202호           | 600,000 |
| 15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05 | 윤명석           | 인천35머3081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51번지<br>20통 1반<br>현우스위트빌<br>401호                | 600,000 |
| 16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08 | 장백규           | 인천80터8686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237번지<br>6호 12통 4반<br>드림빌라 102호                 | 600,000 |
| 17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09 | 김동영           | 86노4167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47번지<br>11호 23통 5반<br>102호                      | 600,000 |
| 18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10 | 김민기           | 인천32마1792 | 429-440 | 경기도 시흥시<br>월곶동 1010번지<br>4호 37통 1반<br>풍림1차(아)제주상<br>가 301호        | 600,000 |
| 19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12 | (주)씨엘에<br>스티파 | 인천86가5658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737번지<br>2호 남동공단<br>163블럭3롯데                     | 600,000 |
| 20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13 | 장순복           | 인천32라9953 | 561-223 | 전라북도<br>전주시덕진구<br>우아동3가<br>743번지 148호 6통<br>5반 우아아파트<br>105동 204호 | 600,000 |
| 21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14 | (주)화승에<br>스피  | 86구5080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453번지<br>10호                                     | 600,000 |
| 22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15 | (주)주광건<br>설   | 인천83다207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14번지<br>29호 녹수빌딩4층                              | 600,000 |
| 23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16 | 영서하이테<br>크(주) | 인천32라9699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735번지<br>166블럭 1롯데                               | 600,000 |
| 24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18 | (주)명전         | 94다1048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47번지<br>11호                                     | 600,000 |
| 25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21 | 강선아           | 80노4180   | 403-130 | 인천광역시 부평구<br>십정동 303번지<br>23호 9통 8반                               | 600,000 |
| 26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22 | 이경훈           | 인천7로113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5번지<br>6호 4통 2반<br>상우다세대주택<br>303호             | 600,000 |
| 27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24 | 이을수           | 인천32거5119 | 405-31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고잔동 698번지<br>5호 19통 4반                               | 40,000  |

|    |        |               |                   |           |         |                                                             |         |
|----|--------|---------------|-------------------|-----------|---------|-------------------------------------------------------------|---------|
| 28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25 | 오기순               | 인천70마884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35번지<br>20호 4통 5반<br>칠성다세대주택<br>B동 101호   | 170,000 |
| 29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26 | 씨에이지로<br>지스틱스     | 인천84바9255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19번지<br>4호<br>한진아파트상가<br>2층 33            | 40,000  |
| 30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28 | 허 락               | 인천30도920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478번지<br>3호 17/1<br>세종빌리지 C동<br>B01호       | 40,000  |
| 31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34 | VANCHIG<br>YANJIN | 80모1192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22번지<br>24호                               | 40,000  |
| 32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35 | 최미경               | 06서7903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7번지<br>141호 24통 4반<br>새빛하이츠빌라<br>2동 401호  | 40,000  |
| 33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36 | 문천재               | 인천83다6704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00번지<br>153호 26통 2반<br>현대홈타운 105동<br>601호 | 40,000  |
| 34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39 | (주)한국전<br>통특산     | 86구721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29번지<br>22호<br>노빌리안520호                  | 190,000 |
| 35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47 | 박인자               | 인천32거2168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559번지<br>2호 2통 2반 301호                     | 110,000 |
| 36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49 | 강석균               | 인천32려6917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05번지<br>16통 1반<br>효성아맨션 1동<br>1501호       | 40,000  |
| 37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51 | 김호석               | 50려5263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4번지<br>17통 3반<br>롯데캐슬골드<br>2405동 801호     | 40,000  |
| 38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55 | 김삼교               | 92가1558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341번지<br>12호 35통 1반<br>우정구월아파트<br>1동 301호  | 40,000  |
| 39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57 | 정정아               | 인천32거5497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11번지<br>11호 21통 1반<br>우성다세대주택<br>1동 102호  | 40,000  |
| 40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58 | (주)미추홀<br>환경      | 26누1818   | 405-26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서창동 104번지<br>27호                               | 40,000  |

|    |        |               |     |           |         |                                                                       |        |
|----|--------|---------------|-----|-----------|---------|-----------------------------------------------------------------------|--------|
| 41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61 | 한정원 | 91구485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483번지<br>2호 17통 7반<br>덕수빌리지 A동<br>201호               | 40,000 |
| 42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67 | 김형운 | 인천70라839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20번지<br>24통 4반<br>주공아파트 610동<br>304호                 | 40,000 |
| 43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68 | 김태근 | 인천33구7441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34번지<br>1호 55통 5반<br>어진마을한화꿈에<br>그린아파트 613동<br>802호 | 40,000 |
| 44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69 | 맹창수 | 28머2002   | 402-200 | 인천광역시 남구<br>주안동 865번지<br>1호 13통 6반<br>우진다세대 1동<br>303호                | 40,000 |
| 45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70 | 한은경 | 86어1088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304번지<br>6호 8통 6반<br>송림빌라 301호                       | 40,000 |
| 46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72 | 조현금 | 45가5184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04번지<br>1호 52통 4반<br>넷마을신영지웰아<br>파트 904동 503호       | 40,000 |
| 47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75 | 차동현 | 86노5518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43번지<br>1호 60통 3반<br>논현휴먼시아<br>범마을 203동<br>208호     | 70,000 |
| 48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77 | 정명자 | 인천7고6973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24번지<br>14호 26통 4반                                 | 40,000 |
| 49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79 | 권순호 | 86소4678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844번지<br>1호 12통 1반<br>대성유니드별빛마<br>을아파트 103동<br>601호  | 40,000 |
| 50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81 | 주성기 | 45보2110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349번지<br>588호 7통 4반<br>전일빌라 나동<br>201호               | 40,000 |
| 51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83 | 전종섭 | 86부2245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5번지<br>373호 17통 3반<br>성신아파트 3동<br>507호               | 40,000 |

|    |        |               |     |           |         |                                                                   |         |
|----|--------|---------------|-----|-----------|---------|-------------------------------------------------------------------|---------|
| 52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84 | 이봉인 | 인천34도2054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42번지<br>4통 1반<br>광명아파트 106동<br>801호            | 40,000  |
| 53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86 | 강재구 | 86누5896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43번지<br>1호 61통 2반<br>논현휴먼시아<br>범마을 208동<br>804호 | 540,000 |
| 54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89 | 주춘식 | 40주5869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79번지<br>2호 33통 2반<br>공작아파트 다동<br>501호          | 40,000  |
| 55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90 | 김준근 | 인천32너1980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70번지<br>9호 16통 2반<br>성빈다세대주택<br>7동 102호         | 40,000  |
| 56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92 | 이용혁 | 인천33구3947 | 403-020 | 인천광역시 부평구<br>산곡동 산<br>37번지 4호 24통<br>2반 현대아파트<br>302동 1305호       | 210,000 |
| 57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95 | 정수현 | 인천86사1516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1038번지<br>13통 5반<br>삼익세라믹아파트<br>103동 104호        | 40,000  |
| 58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98 | 황선엽 | 인천35머6671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39번지<br>1호 19통 7반<br>간석래미안자이아<br>파트 106동 2402호  | 40,000  |
| 59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699 | 이재식 | 86무8981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01번지<br>90호 25통 1반<br>B02호                      | 40,000  |
| 60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05 | 박호용 | 인천80려4311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1번지<br>16호 44통 1반                               | 40,000  |
| 61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08 | 김진수 | 20부2535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46번지<br>8호 10통 4반<br>201호                      | 40,000  |
| 62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11 | 이박윤 | 인천80려2109 | 402-200 | 인천광역시 남구<br>주안동 26번지<br>105호 26통 1반<br>삼흥맨션 201동<br>402호          | 40,000  |

|    |        |               |                |               |         |                                                            |         |
|----|--------|---------------|----------------|---------------|---------|------------------------------------------------------------|---------|
| 63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12 | 최윤향            | 인천80녀5315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01번지<br>22통 6반<br>극동아파트 6동<br>308호       | 40,000  |
| 64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13 | 손효성            | 93나367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69번지<br>5호 8통 4반<br>삼성다세대주택<br>가동 202호   | 50,000  |
| 65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16 | 정선옥            | 80더2772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70번지<br>2호 16통 4반<br>대신다세대주택<br>102호     | 40,000  |
| 66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19 | 임지호            | 93소6048       | 405-25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장수동 806번지<br>3호 22통 4반<br>주공아파트 108동<br>1304호 | 40,000  |
| 67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24 | 임종오            | 인천34노8421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41번지<br>22호 20통 7반<br>202호               | 180,000 |
| 68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26 | 전지영            | 80두300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35번지<br>29호 4통 3반<br>우성아튼빌 E동<br>401호    | 140,000 |
| 69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27 | 신현용            | 인천32거476<br>0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893번지<br>27통 1반<br>현대아파트 101동<br>702호     | 40,000  |
| 70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28 | 윤일영            | 76어2458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24번지<br>23호 27통 2반<br>영화다세대주택<br>나동 201호 | 40,000  |
| 71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32 | 이호영            | 90나4149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03번지<br>1호 34통 6반<br>주공아파트 803동<br>204호  | 80,000  |
| 72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33 | 황두섭            | 07다4126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519번지<br>4호 31통 2반<br>한진아파트 1동<br>901호    | 220,000 |
| 73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34 | 성주환            | 86러1337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20번지<br>19통 2반<br>구월힐스테이트<br>3101동 1805호  | 40,000  |
| 74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36 | (주)대림엔<br>지니어링 | 인천80러5162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42번지<br>20호<br>타워플러스빌딩<br>1102호         | 40,000  |

|    |        |               |       |           |         |                                                                         |         |
|----|--------|---------------|-------|-----------|---------|-------------------------------------------------------------------------|---------|
| 75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38 | 이형석   | 15수8428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20번지<br>6호 1통 1반<br>성일빌라 404호                         | 430,000 |
| 76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43 | 김관식   | 인천80터9815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129번지<br>28호 6통 5반                                     | 40,000  |
| 77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44 | 문창희   | 인천70가3413 | 429-060 | 경기도 시흥시<br>은행동 317번지<br>3호 19통 6반<br>신성아트타운18차<br>110동 401호             | 40,000  |
| 78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48 | 정명환   | 86부4787   | 405-3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논현동 635번지<br>1호 57통 6반<br>논현휴먼시아<br>하늘마을 310동<br>1306호     | 420,000 |
| 79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49 | 김홍식   | 86라3113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389번지<br>36호 12통 4반                                    | 40,000  |
| 80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50 | 한상운   | 인천32마9840 | 402-070 | 인천광역시 남구<br>문학동 370번지<br>4호 14통 1반<br>한성파크빌라 나동<br>102호                 | 40,000  |
| 81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54 | 전인숙   | 인천2머2670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05번지<br>16통 6반<br>효성상아맨션 4동<br>1306호                  | 40,000  |
| 82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56 | 고아라   | 80노1525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479번지<br>8호 17통 3반<br>아네스빌 204호                        | 40,000  |
| 83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59 | (주)세익 | 48마1366   | 405-10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남촌동 611번지<br>4호 남동공단<br>35블럭 4롯데                           | 40,000  |
| 84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60 | 이길형   | 인천80려6952 | 425-020 | 경기도<br>안산시단원구<br>고잔동 631번지<br>42통 2반<br>상진그린빌라 다동<br>201호               | 560,000 |
| 85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61 | 김영석   | 86보9837   | 573-370 | 전라북도 군산시<br>수송동 812번지<br>1호 5통 4반<br>군산수송동제일오<br>뚜그란데 2단지<br>511동 1504호 | 40,000  |
| 86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62 | 정영식   | 95고4389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348번지<br>14호 11통 4반                                   | 40,000  |
| 87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63 | 이황수   | 87버4159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251번지<br>6호 5통 3반                                      | 40,000  |

|    |        |               |     |         |         |                                                               |         |
|----|--------|---------------|-----|---------|---------|---------------------------------------------------------------|---------|
| 88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64 | 이경로 | 86소3920 | 405-24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만수동 905번지<br>16통 3반<br>효성아맨션 2동<br>601호          | 240,000 |
| 89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67 | 금상호 | 38라6630 | 405-23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간석동 938번지<br>1호 10통 5반<br>어울림마을아파트<br>103동 1601호 | 40,000  |
| 90 | 우체국 보관 | 1444202492771 | 임병록 | 86구1071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1163번지<br>10호 28통 5반<br>충인빌라 B동<br>102호      | 40,000  |